

연구보고서 2006-4

#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체계 연구

류건식·이경희

2006. 10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머 리 말

지금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계가 모색되고 있으며, 은행권에 대한 신BIS협약은 2005년 11월에 확정·발표되었다. 금융의 통합화 현상으로 인해 신BIS협약은 보험권의 새로운 재무건전성체계인 Solvency II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재무건전성체계는 3 pillar 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세 번째 pillar가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의 확립이다. 이러한 감독기조의 국제적 변화는 우리 보험회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서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리스크 공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감독기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리스크 공시 관련 핵심 이슈 및 선진 금융기관의 공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우리 현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의 공시 관련 권고안을 살펴보고, Citi, ING, AIG, Sun Life 등 선진 금융회사의 공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새로운 재무건전성체계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감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6년 10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김창수

## < 목 차 >

요 약 .....	9
I. 서론 .....	16
1. 연구배경 .....	16
2. 연구범위 .....	19
II. 재무건전성규제의 변화 .....	20
1.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로의 이행 .....	20
2. 신BIS규제 형태의 보험감독정책 추진 .....	24
III.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공시 제안 .....	28
1. 신BIS협약에서 제시된 기준 .....	28
2.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제시된 기준 .....	33
3. 합동실무작업반에서 제시된 기준 .....	42
4.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제시된 기준 .....	46
5. 평가 .....	53
IV. 선진국 리스크 공시 관련 규제 및 사례 .....	56
1. 선진국의 리스크 공시 관련 규제 .....	56
2. 선진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 .....	64
3. 평가 .....	82
V. 우리나라 리스크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85
1. 금융권의 리스크 공시제도 현황 .....	85
2.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제도 현황 .....	88

3.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제도의 문제점 .....	97
VI.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용방안 .....	100
1. 기본방향 .....	100
2. 세부방향 .....	104
3. 향후과제 .....	114
VII. 요약 및 결론 .....	116
참고 문헌 .....	120

## <표 차례>

<표 II-1> 감독 및 규제 주요 변화 .....	20
<표 II-2> 신BIS협약의 구조 .....	21
<표 II-3> 금융회사별 리스크유형별 중요도 비교 .....	26
<표 II-4> 우리나라 보험감독체제의 변화 .....	27
<표 III-1> 신BIS협약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	33
<표 III-2>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I) .....	40
<표 III-3>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II) .....	41
<표 III-4> 합동실무작업반의 리스크유형별 VaR 공시 권고안 .....	43
<표 III-5> 합동실무작업반의 잔존만기별 신용 익스포져 공시 권고안 .....	44
<표 III-6> 합동실무작업반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공시 권고안 .....	44
<표 III-7> 합동실무작업반의 신용 익스포져 규모 공시 권고안 .....	45
<표 III-8> 합동실무작업반의 보고 기간 동안의 신용손실 공시 권고안 .....	45
<표 III-9> 합동실무작업반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	46
<표 III-10>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시에 관한 원칙 .....	47
<표 III-11> 국제보험감독자협회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	52
<표 III-12>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비교 .....	55
<표 IV-1> 미국 SEC의 10-K 양식 .....	57
<표 IV-2> 미국 증권거래법의 난외계정계약에 대한 공시 양식 .....	58
<표 IV-3> 캐나다의 생명보험 이원분석 공시 양식 .....	63
<표 IV-4> Citi Group의 자본 관련 공시 사례 .....	68
<표 IV-5> Citi Group의 위험자본 관련 공시 사례 .....	69
<표 IV-6> Citi Group의 부문별 수익률 공시 사례 .....	70
<표 IV-7> ING 그룹 보험부문의 보험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공시 .....	72
<표 IV-8> ING 그룹 보험부문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공시 .....	73
<표 IV-9> ING 그룹 보험부문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 공시 .....	74
<표 IV-10> ING 그룹 보험부문의 내재가치에 대한 공시 .....	75

<표 IV-11> AIG 손해보험부문의 시장리스크 규모 공시 .....	76
<표 IV-12> Sun Life의 리스크분류 및 관리 방법 공시 사례 .....	78
<표 IV-13> Sun Life의 경제적·계리적 가정 공시 사례 .....	80
<표 IV-14> Sun Life의 파생상품 활용 공시 사례 .....	81
<표 IV-15> Sun Life의 이원분석 공시 사례 .....	82
<표 IV-16> 선진금융회사의 공시 비교(2005) .....	84
<표 V-1> 증권거래별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	86
<표 V-2>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	86
<표 V-3>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수행에 의한 공시 .....	87
<표 V-4>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방안 추진경과 및 세부내용 .....	87
<표 V-5> 보험회사의 경영통일공시 기준 .....	89
<표 V-6>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현황 및 체계 .....	91
<표 V-7> 우리나라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 내용 및 특징 .....	92
<표 V-8> 리스크관련 공시의 항목별 서식 .....	93
<표 V-9> DART에 의한 공시 현황 및 체계 .....	94
<표 V-10>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공시내역 및 특징 .....	96
<표 VI-1> 리스크 공시의 기본적 인프라 .....	100
<표 VI-2> 리스크 공시체계의 단계별 추진기준 및 상황 .....	102
<표 VI-3>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지침 및 권고 .....	103
<표 VI-4> 자기자본내역 및 자본적정성의 단계별 공시방향 .....	107
<표 VI-5> 신용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	108
<표 VI-6> 시장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	108
<표 VI-7> 운영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	109
<표 VI-8> 책임준비금 및 보험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	112
<표 VI-9> 공시방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13

## <그림 차례>

<그림 II-1>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 하의 감독모델 변화 .....	23
<그림 II-2> 금융회사의 공시 구조 .....	24
<그림 II-3> Solvency II의 3 pillar 체계 .....	25
<그림 II-4> 신BIS협약의 영향력 .....	27



요 약
-----

## 1. 연구 목적

- 은행의 재무건전성체계인 신BIS협약이 확정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은 3 pillar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음.
- 3 pillar 체계 중 세 번째 pillar는 시장규율 촉진을 위한 공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상당 수준의 리스크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은행권의 신BIS협약은 2007~2008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도입될 예정임.
- 보험권의 새로운 재무건전성체계인 Solvency II도 큰 골격 측면에서는 신BIS협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도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 Solvency II의 pillar 3는 2009년 경에 완료되어 적용될 예정임.
  
- 따라서, 향후 감독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기준 및 권고안, 선진금융회사의 공시 현황 및 각국의 규제 등을 조사·연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리스크 공시 운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공시 권고안

- 신BIS협약에서 제시된 기준
  - 공시의 목적은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 평가절차와 자본적정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촉진하는 데 있음.

- 공시 주기는 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형 은행의 경우 분기별로 자기자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은행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시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시 프로세스에 관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 요구되는 공시 내용은 “자기자본 세부 내역”과 “리스크별 익스포져 및 측정방법”에 관한 질적 정보 및 양적 정보임.

□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제시된 기준

- 정보공시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인 IFRS 4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을 제시함.
-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으로서 회계원칙, 자산·부채·수익 및 비용, 중요 가정 및 가정 변동효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 장래 현금흐름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로서 리스크관리 목적과 보험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안, 보험계약의 조건, 보험리스크, 이자율 및 신용리스크, 내재파생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에 관한 공시를 요구함.

□ BIS 합동실무작업반에서 제시된 기준

- 합동실무작업반에서는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간 균형, 내부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법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공시, 기말 뿐만아니라 기중 리스크에 대한 정보공시를 3대 원칙으로 제시함.
- 질적 정보로서 리스크 익스포져 현황 및 관리방안, 비계량 항목에 대한 설명, 익스포져의 특성 및 규모 추이를 요구함.
- 양적 정보로는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을 지적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제시된 기준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는 보험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대한 공시 기준,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에 대한 공시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생명보험사에 대한 공시 기준은 작업 중에 있음.
-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방식, 정보산출 방식, 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3. 선진국 리스크 공시 관련 규제 및 사례

□ 미국

- 미국에서는 사베인-옥슬리법 제정을 계기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개기업들은 사업보고서(annual report)의 Form 10-K 규정에 의거하여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함.
- 10-K 양식에서는 경영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설명, 시장리스크에 대한 양적 공시 및 질적 공시와 같은 리스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함.

□ 유럽

- 유럽연합 국가들은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존 재무보고 기준을 IFRS 기준으로 변경하고 있음.
- 2005년부터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사업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유럽내재가치산출원칙(EEV)에 의거하여 내재가치를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내재가치 변동 원인 및 가정변경에 따른 민감도분석 결과도 공시하고 있음.

## □ 캐나다

- 1997년부터 생명보험분야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며 주로 투자자산 관련 익스포져(exposure), 리스크관리 및 통제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함.
- 2004년부터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이익 원천(source of earnings)에 관한 공시를 권고하고 있음.

## □ Citi Group 사례

- Citi 그룹은 경제적 자본 개념에 의거하여 리스크별(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보험리스크) 요구자본을 공시하고, 영업부문별 위험자본, 위험자본수익률 및 투자자본수익률을 공시함.
- 자본항목에 대해서는 자본조달 내역에 대한 정보로서 자본비율, 자본의 항목별 구성내역(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에 대해 공시함.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에 관한 질적 정보 및 양적 정보를 공시하며, 유동성관리 관련 정보를 공시함.

## □ ING Group 사례

- 2004년부터 생명보험 부분의 내재가치 측정결과를 공표하였으며, 내재가치 변동 원인 및 가정 변동시 내재가치 변동 효과를 공시함.
- 보험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분석(사망률, 입원율, 사고율  $\pm 10\%$  변동시 순이익 및 주주지분에 미치는 효과) 결과를 공시함.
-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분석(이자율  $\pm 1\%$ , 추가·환율·부동산  $\pm 10\%$  변동시 순이익 및 주주지분에 미치는 효과) 결과를 공시함.
- 신용리스크는 신용등급별·산업분야별·지역별 익스포져 분포를 공시함.

## □ AIG 사례

- 사업보고서의 MD&A 부문에서 손해보험의 손해율 추세 요인, 손해진전계수, 손해율 및 사업비율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며, 생명보험의 관련 변수인 이자율, 사망률, 입원율, 해약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준비금 추정치의 변동성과 민감도분석에 관한 사항임.
- 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용리스크 헤지 전략, 시장리스크, 자본조달구조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으며, 최저보장이 부가된 내재파생상품의 부채 추정 방법을 설명함.

□ Sun Life 사례

- 리스크관리 목적, 문화 등 리스크 체계에 관한 질적 공시와 리스크 관리 절차, 리스크 측정 방식, 자본적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리스크를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상세 리스크관리 방법을 설명함.
- 사망률, 입원율, 해지율, 주가, 이자율, 사업비 등 경제적·계리적 가정의 추정 방법 및 각각의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를 공시하며, 파생상품을 활용한 상품에 대해서도 공시함.
- 이익의 원천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정이익 대비 실제 이익의 변동원인을 규명함.

**4.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
- 이들 규정 및 보험사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란에 리스크관리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

용은 회사 내 리스크관리 조직의 구성 및 활동, 금리·보험·시장·신용·유동성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의 개념, 관리대상 리스크, 리스크 측정방법 및 관리방법임.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회원사의 경영공시 내용을 집중하여 공시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공시 내용 및 수준은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과 유사함.
- 경영통일공시에 포함된 리스크 공시는 양적·질적으로 내용이 미흡하며, 정보의 유용성이 부족함.
- 자산에 대한 정보는 항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책임준비금 등 부채에 대한 정보는 빈약함.
  - 주요 재무정보가 서식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질적 정보가 부족하며,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미래지향적 정보도 부족함.

## 5.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용방안

- 리스크 공시가 시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선결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요인은 미성숙된 상황이므로 단계적 접근방식이 적합함.
- 단계 구분은 현행 1단계(2006~2007년), 리스크 감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단계(2008~2010년), Solvency II의 제정이 완료되는 3단계(2011년 이후)로 함.
- 단계별 리스크 공시 제도의 운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자기자본 내역은 2단계까지 자본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보완자본 내역은 3단계에서 공시하며, 자본적정성은 2단계

에서 평가방법 및 법정요구자본 금액을 공시하고, 3단계에서 내부 모형에 의한 경제적 자본을 공시함.

-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는 가장 진전된 분야이기 때문에 1단계 및 2단계에서 질적 공시 및 양적 공시의 상당 부분을 공시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내부모형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운영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현재 가장 빈약한 수준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정보를 확충하여 공시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도 자산 부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 공시를 확대하도록 하며, 준비금 추정방법, 추정에 사용된 경제적·계리적 가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보험리스크는 보험회사 고유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타 업권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높으며, 주로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방법, 민감도분석, 내재파생상품 관련 정보 등 질적 항목을 중심으로 요구됨.
- 공시주기의 경우 질적 공시는 1년, 양적 공시는 반기, 자본 관련 정보는 분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시내용은 장기적으로 현행 경영통일공시기준과 사업보고서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6. 향후 과제

- 감독당국은 시장규율을 촉진하고, 재무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임.
- 보험회사들도 글로벌 전략 추진 및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무정보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여 공시할 필요성이 있음.

## I. 서론

### 1. 연구배경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를 중심으로 한 국제감독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시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기본적으로는 ① 재무성과 ② 자기자본, 지급능력 및 유동성을 포함한 재무상태 ③ 리스크관리전략 및 실행 ④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 익스포져 ⑤ 회계정책 및 실무지침 ⑥ 주 업무, 경영층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공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금융회사간 업무영역 장벽이 없어지는 등 금융겸업화 현상과 금융위기 발생은 금융시스템 안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왔다. 이에 국제감독기구도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회계처리방식에 근거한 재무회계정보보다는 리스크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정보의 공시를 보다 중시하기에 이르렀으며, 국제감독기구 및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실현가능한 공시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 공시 중시의 감독정책 변화라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공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점검하고, 보다 글로벌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험권 역시 신BIS협약(Basel II)의 시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BIS협약에 포함된 리스크 공시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에 기초한 리스크 공시 방안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기준 및 권고안, 선진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리스크 공시를 둘

러싼 규제 및 감독과 시장에서의 반영 추이 등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체계의 확립은 은행 중심의 신BIS협약뿐만 아니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나 국제보험회계기준 등 보험 관련 국제감독기구의 견해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기준과 선진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리스크 공시체계의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분석한 후, 국내 실정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감독정책의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국제감독기구의 공시강화에 대한 노력은 1994년 10개 중앙은행의 실무위원회에서 발표한 Fisher 보고서(Euro-currency Standing Committee 1994)에서 시작되었다. Fisher 보고서 발표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 강화를 권고하였는데, BCBS는 1998년 9월 "Enhancing Banking Transparency"라는 보고서에서 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유형 및 공시요건을 제시하였고, 2000년 9월 "Best Practices for Credit Risk Disclos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리스크의 회계처리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995년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에서 공동으로 세계적인 은행 및 증권회사의 트레이딩 및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반영하여 공시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1999년 12월 "Trading and Derivatives Disclosures of Banks and Securities Firms"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71개 은행 및 증권회사의 시장리스크 및 리스크관리방법을 제시함과 아울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하여도 공표하였다. 특히 1996년 6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의 국제감독기구는 리스크 공시에

대한 보다 실현가능한 작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회사로 구성된 합동실무 작업반(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는데, 합동실무 작업반은 2001년 4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헤지펀드의 리스크에 관한 공시개선을 위한 공시사항을 최종보고서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결제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된 새로운 자본요건에 대한 협약인 신BIS는 2005년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리스크 공시 항목이 포함되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에 대한 연구도 신BIS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계리사회(IAA),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신BIS협약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인 신BIS실을 신설하여, 여러 차례의 워크숍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요 관심사는 은행의 리스크 측정에 관한 사항이다. 보험개발원(2004)의 연구에서는 Solvency II의 추진상황 하에서 리스크 공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04년 말 이후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공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 작업반”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련 공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작업반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련 공시항목 확대,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시목적별 공시내용 재정비 등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및 현행 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독당국의 조사·연구와는 달리 김정렬(2004)은 금융기관 공시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리스크 공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신BIS협약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으며, 보험권의 리스크 공시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게 될 Solvency II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체계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연구는 리스

크 공시의 방향성을 선행적으로 모색하고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주요 연구방법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에 대한 문헌조사, 외국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조사와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국내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현황을 국제적 흐름 및 선진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한 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별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리스크 공시에 대한 로드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최근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규제의 변화에 대해 개관하고, III장에서는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IV장에서는 외국의 규제 및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V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체계 및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VI장에서는 향후 개선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 II. 재무건전성규제의 변화

### 1.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로의 이행

금융회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리스크의 파악과 통제가 금융회사 경영 및 감독의 핵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정책도 변화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보유 리스크에 상응한 자기자본 요구,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감독 시행, 리스크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공시 등이다.

EU에서는 기존 재무건전성 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Solvency I 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2010년 적용을 목적으로 Solvency II와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규제인 신BIS협약 최종안은 2004년 6월에 확정<sup>1)</sup>되었으며, 회원국은 2007년 초 시행 예정이다. 비회원국은 각 감독당국이 시행 여부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도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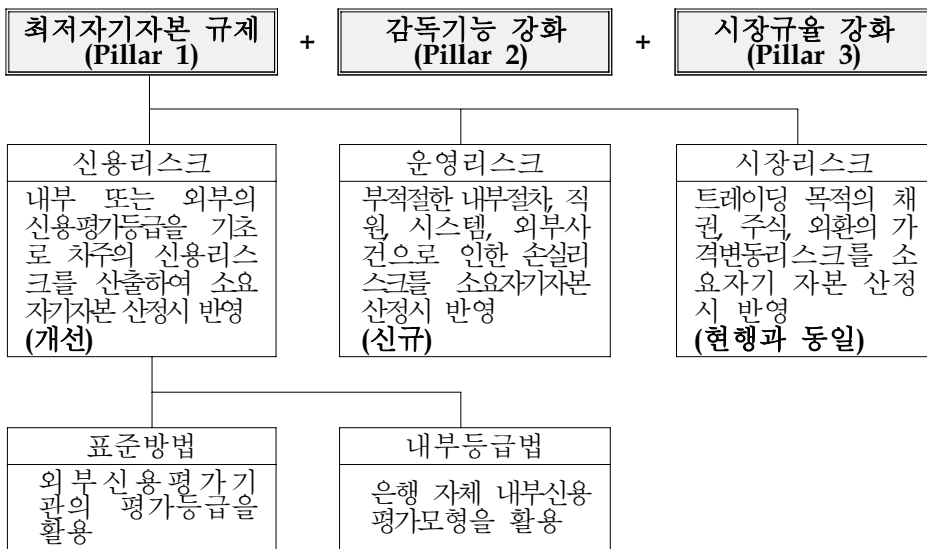
<표 II-1> 감독 및 규제의 주요 변화

시기	주요 변화 사항
2004	EU의 Solvency I 시행
2005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 완성, EU상장회사 국제회계기준 적용
2007	은행권 신BIS협약 적용(2007년), 고급법 적용(2008년)
2010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완료, EU Solvency II 완료 예정
2011~	EU 국가별 Solvency II의 적용 국제보험회계기준 적용 국가의 확대

1) 2005년 11월 수정보고서가 발표되었음.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로의 변화는 Basel II로 불리는 신BIS협약이 선두에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규제완화와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규제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을 추진하였다. 신BIS협약은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①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1), ② 감독기능 강화(pillar 2), ③ 시장규율 강화(pillar 3) 등과 같은 3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 신BIS협약의 구조



자료: 금융감독원 신BIS실(2005)

pillar 1의 최저자기자본 규제는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유형별 요구자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뿐만 아니라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사용을 허가하였다. 표준방법은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

용하는 방법<sup>2)</sup>이며, 내부등급법은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sup>3)</sup>이다. pillar 2의 감독기능 강화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식별하는 데 감독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감독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최종적으로 pillar 3에서는 적절한 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서, 감독 규율을 보완하는 시장규율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시장규율은 감독당국의 지도 혹은 간섭 등이 없이 시장참가자들이 사적인 이해를 매개로 형성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김정렬 2002). Berger(1991)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은 은행의 리스크 추구에 따라 주주, 예금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증가될 때, 리스크 추구 수준에 상응하는 비용<sup>4)</sup>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렬 2004에서 재인용). 또한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므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forbearance)를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의 필요성은 현실 세계에서 시장규율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Harrington(2003)과 Flannery·Nikolova(2003)이 시장규율의 효과를 금융회사와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시장에서도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일수록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김정렬 2004에서 재인용). 시장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은 공시제도, 예금보호한도, 후순위채권 시장의 발달 정도, 금융시장 성숙도 등 시장참여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감시 유인 등인데, 이 중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보의 획득과 공개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Nier·Baumann(2003)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

2) 리스크 익스포져×표준화된 계수를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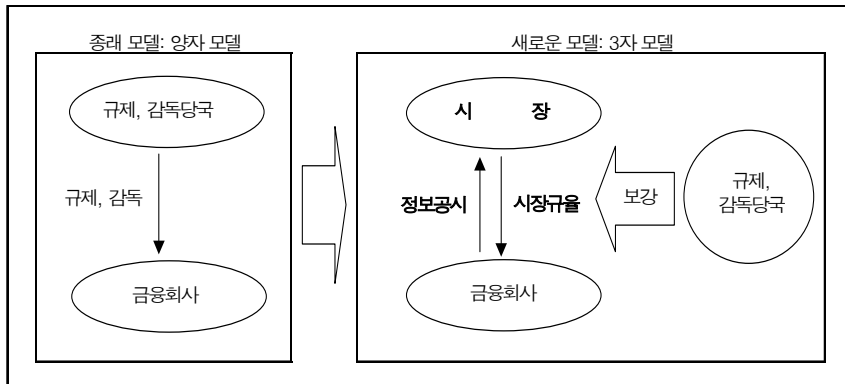
3) 회사의 경험률에 입각한 리스크계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4) 예금 금리 인상, 발행금리 인상 등

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시 수준이 시장규율의 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렬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본구조, 리스크익스포저 및 리스크측정방법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촉진시키고자 의도한 것이다. 다만, 시장규율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시장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시장규율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감독모델도 변화하고 있다. 즉, 기존 재무건전성체제 하에서의 감독모델은 규제·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모델이었으나,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에서는 금융회사와 시장간 정보공시와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규제·감독당국이 이를 보강하는 3자모델로 바뀌고 있다.

<그림 II-1>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 하의 감독모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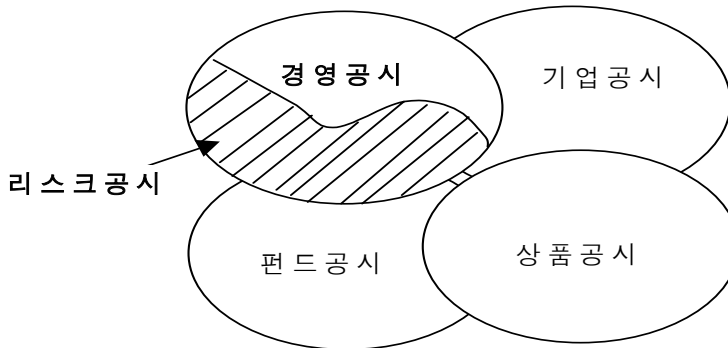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 재팬 종합연구소(2005)

금융회사의 공시는 ① 유가증권 발행자로서의 기업공시, ② 금융중

개자로서의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영공시, ③ 펀드의 운용방법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는 펀드공시, ④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상의 계약사항을 알리기 위한 상품공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유통시장 공시 위주인 경영공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리스크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림 II-2> 금융회사의 공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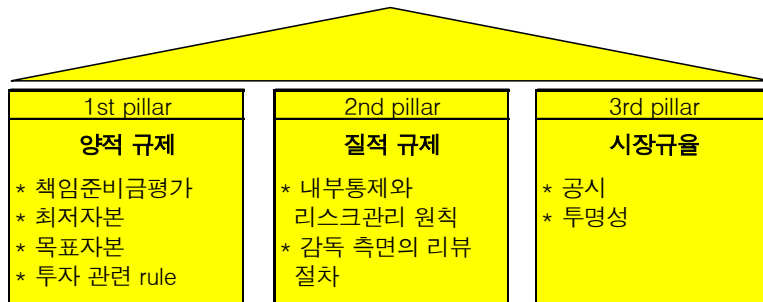
## 2. 신BIS규제 형태의 보험감독정책 추진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규제인 신BIS협약은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제도 수렴의 경향, 리스크관리 및 규제절차를 일관성 있게 확립하려는 경향 속에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범금융권 제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U는 기존의 EU Solvency를 보완한 EU Solvency I을 이미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신BIS협약의 "3 Pillar Method"를 근간으로 한 Solvency II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Solvency II의 주요 내용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의 이원화이다. 최저자본(minimum capital)은 감

독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본수준이며, 목표자본(target capital)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적절한 자본 수준이다. 요구자본의 이원화를 통해 감독당국의 조기개입과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의도이다. 요구자본 산출은 현재의 단순한 고정비율방식에서 보험회사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3> Solvency II의 3pillar 체계



자료: SwissRe(2006)

이와 같이 신BIS규제가 은행권 중심의 새로운 채무건전성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부문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금융업의 특성상 은행과 보험회사는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즉, 은행과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보험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만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sup>5)</sup>.

5) 은행의 경우는 대출업무의 특성상 신용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에서는 위험의 인수로 인해 언더라이팅리스크가 가장 핵심임.

&lt;표 II-3&gt; 금융회사별·리스크유형별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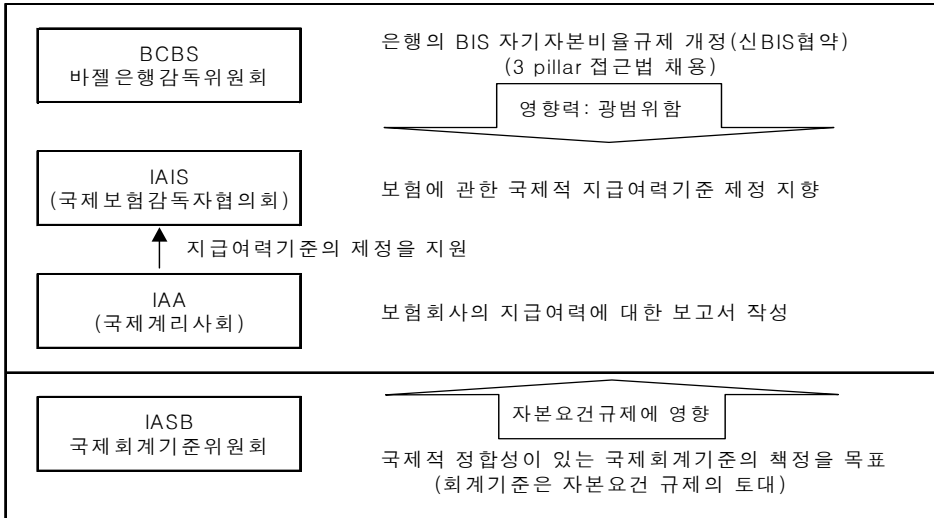
	보험	상업은행	투자은행
언더라이팅리스크	대	무시할만함	없음
비용리스크	소	소	소
신용리스크	중	대	중
계약리스크	무시할만함	소	n/a
시장리스크	소	소	대
유동성리스크	중	대	소

자료: KPMG(2002)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도 보험회사에 대한 국제적 지급여력기준에 부합하는 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계리사회에서는 이러한 단일한 지급여력기준의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계리사회에서 2004년에 발표한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의 핵심 내용은 리스크 중심 재무건전성체제의 구축이며 보험회사가 요구자본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IAA 2004).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신 BIS협약 적용, 보험권의 Solvency II 추진과 같은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제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노출된 리스크 및 이의 통제능력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배분하는 선별적·차등적 감독방식, 즉 리스크중심 감독체제(Risk Based Supervision: RBS)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4> 신BIS협약의 영향력



자료: 손해보험 재관 종합연구소

우리나라가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자기자본 규제에 해당하는 RBC제도 도입 및 RAAS의 시행과 동시에 이들을 보완하여 시장규율을 촉진할 수 있는 공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 될 것이다. 공시의 내용도 과거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수준, 자본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준 등 시장참여자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 중심의 정보에 더 많은 수요가 존재할 것이다.

<표 II-4> 우리나라 보험감독체제의 변화

신BIS협약	리스크감독체제
pillar 1: 최저자기자본 규제	RBC제도
pillar 2: 리스크 중시 경영관리 유도	RAAS
pillar 3: 시장규율 강화	리스크 공시

### Ⅲ.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공시 제안

#### 1. 신BIS협약에서 제시된 기준

##### 가. 일반 사항

신BIS규제를 받는 은행들은 pillar 3에 의해 공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은행에 이러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시의 목적은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 평가절차와 자본적정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시 내용은 은행의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공시의 형식은 회계기준이나 기타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나 감독자에게 제공하는 보고서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은 금융기관이 모든 관련 정보를 한 장소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정보가 회계공시와 함께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시의 주기는 리스크관리 목적과 원칙, 보고시스템 및 정의와 같은 질적 공시를 제외하고는 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내역을 분기 기준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나 다른 항목이 급변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나. 공시요건

은행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공시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시 프로세스에 관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공시의 검증과 빈도를 포함하여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한다. 신BIS 협약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은행의 “자기자본 세부 내역”과 “리스크별 익스포져 및 측정방법”에 관한 질적 정보 및 양적 정보에 관한 사항이다.

## 다. 공시 사항

### 1) 자본

자본구조에 대한 질적 공시는 모든 자본 항목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특히 신종자본증권 및 하이브리드 자본의 경우는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본구조에 대한 양적 공시 내용은 기본자본(tier 1)<sup>6)</sup>에 대한 개별공시 및 총량, 보완자본(tier 2와 tier 3)<sup>7)</sup> 총량, 자본의 차감 항목 등에 대한 금액이다.

자본적정성에 대한 질적 공시는 현재와 미래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다. 자본적정성에 대한 양적 내용으로는 신용, 주식, 시장, 운영리스크 등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요구자본 수준, 총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기자본비율의 공시를 요구한다.

### 2) 리스크 익스포져와 측정

은행이 직면하는 리스크와 이러한 리스크를 인식, 측정, 모니터 및 통제하는 기법은 시장참여자들이 은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BIS에서는 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6) 납입자본, 유보금, 자회사 소액주주지분, 신종자본, 기타 자본, 보험회사로부터의 잉여금 등

7) 단기후순위채무

### 가) 일반적인 질적 공시 요건

리스크와 관련한 질적 정보로서 은행은 신용, 시장, 운영, 주식 등과 같은 리스크별로 리스크관리 목적과 정책을 공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 ① 리스크관리 전략과 절차
- ②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구조 및 조직
- ③ 리스크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의 범위와 특성 등
- ④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헤지 정책과 헤지의 지속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

### 나)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는 은행의 리스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서, 공시를 통해 시장참여자에게 전반적인 신용익스포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목적에 위한 정보에 기초할 필요는 없다. 신BIS협약의 큰 특징은 은행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데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방법은 감독당국의 승인이 불필요한 반면,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의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용리스크에 대한 질적 공시는 연체 및 부실자산의 정의, 충당금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 신용리스크 관리 정책, 측정 모델에 대한 설명 등이며 양적 공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① 측정기간 동안 주요 신용리스크 유형별 신용리스크 총량 및 평균, ② 지역별 신용익스포저 분포, ③ 산업별·거래상대별 신용익스포저 분포, ④ 전체 포트폴리오의 잔여만기별 신용익스포저 분포, ⑤ 주요 산업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실금액, 충당금, ⑥ 각 지역별 충당금액, 대손상각금액, 부실대출금액, ⑦ 부실대출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 조정분, ⑧ 표준

방법, 기초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별 익스포져 금액

표준방법으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경우에는 외부신용평가기관 이름, 평가방법, 분류하는 익스포져 유형, 맵핑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며, 신용리스크 경감수단을 통해 익스포져에서 차감된 금액 및 잔여 금액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신BIS협약에서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규제자본 산출시 내부등급방식의 사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은행은 내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만약, 은행이 내부등급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시가 요구된다. 질적 정보 측면에서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는 점, 내부등급체계와 내외부 등급간의 관계, 내부추정치의 사용, 신용리스크 경감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독립성·책임감·신용등급시스템 점검과 같은 신용등급 메카니즘에 대한 통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국가 및 은행, 주식, 주택모기지, 적격회전대출, 기타 개인금융 포트폴리오별로 내부 신용등급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과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익스포져의 유형, 통계모형의 검증과 추정, 가정 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된다. 양적 정보 측면에서는 각 포트폴리오별 추정치와 실제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신용리스크 경감에 대해서는 신용경감 정책,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 담보물의 주요 유형, 보증·신용파생상품으로 경감되는 익스포져 총량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며, 국가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본과 신용한도를 할당하는 방법, 담보를 확보하는 정책, 계약의 공정가치, 상계금액, 담보물 등에 관한 공시가 요구된다.

유동화자산과 관련해서는 유동화 목적, 은행의 역할, 이와 관련한 회계정책 등에 대한 설명, 유동화된 유형별 익스포져 총량, 익스포져 유형별 손실액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 다) 시장리스크(트레이딩 포트폴리오)

은행이 표준방식을 사용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할 경우, 일반적인 질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요구되며, 양적 공시는 이자율리스크, 주가지수, 환율, 상품리스크 등에 대한 자본요구량이 포함된다.

은행이 내부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측정방법론, 모델의 특징, stress testing, 검증 방법, 감독당국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말 시점에서 최고, 중간, 최저 VaR 값, 사후검증 결과 이상치에 대한 분석, 경험치와 추정치의 비교 등이 공시되어야 한다.

#### 라) 운영리스크

현행 BIS협약에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신BIS협약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부터 손실 리스크를 운영리스크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규제자본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리스크의 측정은 표준방식과 고급방식 모두 사용 가능한데, 운영리스크에 대응하는 요구자본 산정 방식, 고급평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요약, 운영리스크 감소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 마) 비트레이딩계정의 주식 및 금리리스크

신BIS협약에서는 트레이딩계정과 비트레이딩계정을 구분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트레이딩계정의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목적별 구분, 보유주식의 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 장부가, 시가, 누적손익, 미실현손익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비트레이딩계정의 금리리스크에 대해서도 성격, 중요 가정, 예금자 행위, 측정 빈도, 금리변화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변동 예상액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1> 신BIS협약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질적 공시	양적 공시
자 본	자기자본 내역	-자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정 보(특히 신종자본증권, 하이브리 드 자본 보유시)	-기본자본(tier 1)항목별 금액 ·보통주·유보금·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의 차감항목 -보완자본(tier 2), 자본차감 항목 -총 자본
	자본 적정성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각 리스크별(신용/시장/운영) 요구자본 -자본비율(=자기자본/요구자본)
리 스 크	신용 리스크	-연체·부실채권에 대한 정의 -충당금, 통계적 방법에 대한 설명 -신용리스크관리정책에 대한 설명	-총신용리스크 익스포저 -익스포저의 지역·산업별 분포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조 -부실채권금액·충당금 조정액
	시장 리스크	-표준모형에 따라 측정된 시장리 스크의 질적 특성 -내부모형에 따라 측정된 시장리 스크의 질적 특성 ·모형의 특징 ·stress testing에 관한 설명 ·모형의 정확성 검증 방법 ·감독당국의 인정 범위	-시장리스크에 대응한 요구자본량 ·이자율·외환·주식·상품 -내부모형하에서의 포트폴리오 ·최고, 중간, 최저 VaR ·VaR 예측값과 실제값 비교
	및 측 정 방 법	-운영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내부모형 사용시 이에 대한 설명 -내부모형 사용시 운영리스크 감 소를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보 험에 대한 설명	

## 2. 국제보험회계기준에서 제시된 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에서는 2004년 최초의 국제보험회계기준인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IFRS 4)을 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유럽의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sup>8)</sup>. 정보공시

는 IFRS 4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일부이지만, 공시의 수위는 보험회사가 자신의 환경에 맞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모든 사항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IFRS 4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본,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무지침서(Implementation Guidance)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실무지침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 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공시

IFRS 4 §36에서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회계원칙, 자산·부채·수익 및 비용, 중요 가정 및 가정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1) 회계원칙

IFRS 4 §37 (a)에서는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원칙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지침서에 의하면,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신계약비, 발생손해액, 부채평가모델, 내재옵션 및 보증, 재보험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처리원칙을 공시할 수 있다.

#### 2)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IFRS 4 §37 (b)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출재한 경우에는

---

8) EU, 캐나다, 호주 등 약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했거나 수용할 예정임.

이에 따른 손익과 이를 이연·상각시킨 경우 기초와 기말의 상각액, 미상각액에 대한 공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공시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실무지침서에서 미경과보험료, 보고발생손해액, 미보고발생손해액, 부채적정성테스트 결과 산출된 준비금, 미수수익 및 미지급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익계산서 항목과 관련해서는 보험 및 재보험 수익, 보험 및 재보험 관련 비용, 신계약비, 추정과 가정의 변동 효과, 할인율 등에 대한 공시가 가능하다.

### 3) 중요 가정 및 가정 변동

IFRS 4 §37 (c)에서는 (b)의 측정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들의 선정 과정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며, 실행가능할 경우 이러한 가정에 대한 양적 공시도 요구한다. IFRS 4 §37 (d)에서는 보험 자산과 보험 부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들의 변동효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IFRS 4 §37 (e)에서는 이연신계약비 변동의 조정 내역에 대한 공시도 요구한다. 대차대조표에 기표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들에 대한 공시는 이용자들이 보고된 정보를 민감도분석하거나,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실무지침서에서는 가정들 간 공시의 난이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할인율,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공시하기 수월한 반면, 사망률의 경우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망률 자체를 공시하는 것보다는 가정 산출에 사용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목적<sup>9)</sup>,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sup>10)</sup>, 과거 경험치, 현재 추세 및 기타 관련 사항, 향후 추세에 관한 설명이 중요하며, 가정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

9) 최선의 추정치 등

10) 자사 경험데이터인가 외부데이터인가 여부

공시하고, 변수들간의 상관성 및 이러한 상관성이 변동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 나. 장래 현금흐름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IFRS 4 §38에서는 정보이용자들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리스크 익스포저의 특성과 잠재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경영활동에서 사용하는 측정방법과 일관되게 공시해야 한다.

##### 1) 리스크관리 목적과 보험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안

IFRS 4 §39 (a)에서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목적과 그러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지침서에 의하면, 보험리스크 인수 정책, 가입한도 설정, 옵션 설정, 리스크 세분화를 위한 언더라이팅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은 기술적인 설명 및 상세한 양적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내부 리스크 측정 모형, 민감도분석, 시나리오분석 및 stress testing과 같이 보험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이 공시될 수 있으며, 접근 방법, 사용한 가정 및 모수(신뢰구간, 과거 관찰 기간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또한, 보유한도 설정 및 재보 출재와 같이 보험리스크를 제한하거나 전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기업 전체적으로 보험리스크가 평가되고 관리되는 범위, ALM 기법,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차입할 수 있는 사전 약정 여부 등에 대한 공시도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 2) 보험계약의 조건

IFRS 4 §39 (b)에서는 장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조건이 존재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개인연금, 기업연금, 기타생명보험, 자동차, 일반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보험종목별로 담보하고 있는 리스크의 특징에 대한 설명, ② 보험리스크, 이자율리스크, 신용리스크, 외환리스크의 집중 및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재보험 처리, 계약자와 공유 장치, ③ 시장가격, 이자율보증 등 향후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보증 수준에 대한 요약, ④ 보험금진전 관련 정보, ⑤ 수익률 고정, 특정 자산 연동, 보험회사의 재량 등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귀속시키는 방법, ⑥ 계약자와 성과 및 리스크 공유 상황, ⑦ 보험부채에서 발생하는 순현금유입·유출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1년 전·후로 구분하여 제공, ⑧ 계약자가 행사하는 해약 옵션에 따라 현금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⑨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목시적인 평균 할인율, ⑩ 중요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⑪ 정부 혹은 보증기금에 대한 각출 의무, 우발적 채무

### 3) 보험리스크

IFRS 4 §39 (c)에서는 보험리스크에 대해 재보험 처리 전·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지침서에서는 보험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내부적으로 이사 및 최고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일치해서 이용자들이 '경영의 시각을 통해' 재무상황, 성과,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험리스크 측정 방법, 동 방법의 장·단점, 가정, 재보험 효과, 계약자 참여 및 기타 손실경감 요인 등에 관한 공시가 가능하다. IFRS 4 §39 (c) (i)~(iii)에서는 보험리스크에 관한 정보공시를 위해 민감도분석, 보험리스크의 집중 및 보험금진전내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보험리스크에 관한 정보 공시를 위해 중요 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 및 자본 민감도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시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sup>11)</sup>. 실무지침서에 의하면, 민감도분석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계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선형변수의 경우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민감도분석에 대한 정보가 오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예: 1% 변동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1.1% 변동의 효과는 중대한 효과 발생)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민감도분석이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 공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금흐름 자체의 금액보다는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보험리스크의 집중은 빈도는 낮지만 심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공시는 이용자들이 그러한 리스크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실무지침서에서 제시한 보험리스크를 야기하는 집중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높은 거대리스크를 담보할 경우<sup>12)</sup>, ② 단일한 보험사고가 다양한 보험종목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예상치 못한 추세의 변동에 대한 익스포져<sup>13)</sup>, ④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옵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대한 익스포져<sup>14)</sup>, ⑤ 중요한 소송이나 법률리스크, ⑥ 서로 다른 리스크간 상관관계 및 의존도, ⑦ 지역별·영역별 집중도

위원회에서는 보험리스크 공시를 위해 전년도 추정 대비 실제 보험금 발생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IFRS에서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진전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보험금

11) 따라서, 양적 공시도 될 수 있으며, 질적 공시도 될 수 있을 것임.

12) 테러 사건은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기업휴지보험 및 일반인배상보험 계약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익스포져를 발생시킬 수 있음.

13) 예상치 못한 사망률이나 계약자 행동의 변화가 해당됨.

14) 이자율이 급락할 경우 이자율 및 연금 보증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지급 관련 공시가 재무제표보다는 경영에 대한 진단과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 란에 공시되고 있다<sup>15)</sup>. 보험금 진전 내역과 관련한 정보는 이용자로 하여금 장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과대·과소 추정했는지에 대한 지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IFRS에서는 재무제표 내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4) 이자율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IFRS 4 §39 (d)에서는 이자율리스크와 신용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해약 행위가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이자율리스크에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였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이자율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계약의 특성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공시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과 신용보험의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이다.

#### 5) 내재파생상품의 이자율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

IFRS 4 §39 (e)에서는 보험회사가 내재파생상품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율리스크나 시장리스크 익스포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금보장 옵션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사망리스크와 이자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저사망보장 계약의 경우에도 사망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상품의 경우 이자율리스크나 시장리스크가 사망리스크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보증기간의 장기성과 익스포져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장래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익스포져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

15) MD&A는 재무제표 내용과 달리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지 않음.

&lt;표 III-2&gt;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I)

재무제표 항목에 관한 공시	
회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보험료(미경과보험료, 갱신 및 해약보험료 처리 방식 등)</li> <li>·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비용</li> <li>·신계약비 및 이의 본질에 대한 설명</li> <li>·발생손해액 및 손해사정비용, 부채적정성테스트(현금흐름 포함)</li> <li>·부채 평가를 위해 사용된 모델의 목적, 특징, 사용된 정보 출처</li> <li>·내재옵션과 보증(부채 포함 여부 및 측정 방법이 현 시가와 일치하는지 여부)</li> <li>·선택적 배당요소 및 투자성과를 공유하는 계약의 특징</li> <li>·해난구조, 대위변제, 기타 제3자로부터의 회수</li> <li>·보유하고 있는 재보험</li> <li>·언더라이팅 풀, 공동보험</li> <li>·합병, 계약이전을 통해 획득한 보험계약 및 관련 무형자산 처리</li> </ul>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 및 재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채 및 자산</li> <li>·재보험 출재 자산·미경과보험료</li> <li>·보고된 발생손해액 및 미보고발생손해액(IBNR)</li> <li>·무배당 준비금·선택적 배당보험 부채</li> <li>·미수수익, 미지급금·이연신계약비·무형자산</li> <li>·보험수익, 재보험수익</li> <li>·보험비용, 재보험비용</li> <li>·신계약비</li> <li>·추정치와 가정의 변동 효과</li> <li>·부채적정성테스트 결과 인식된 손실준비금</li> <li>·할인된 보험부채(할인율, 할인율 변동 효과)</li> </ul>
중요 가정 및 기타 불확실성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의 목적</li> <li>·데이터의 출처</li> <li>·가정이 전반적인 시장가격과 일치하는가</li> <li>·과거 경험치, 현재 상황, 기타 추정 및 가정 관련 설명</li> <li>·장래 추세에 대한 설명(사망률, 의료비, 법률비용 등)</li> <li>·서로 다른 가정간의 상호관련성</li> <li>·특정 가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li> </ul>
가정의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 부채 측정시 사용된 가정 변동의 효과</li> <li>·가정들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 및 이로 인한 한계 및 결과</li> <li>·재보험 출재 전·후의 가정 변동 효과</li> </ul>

<표 III-3>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II)

장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	
리스크관리 목적 및 보험리스크 경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리스크 인수 정책(가입한도, 옵션의 설정 등)</li> <li>·언더라이팅 전략</li> <li>·보험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하는 방법론(내부모델,민감도분석)</li> <li>·보험리스크에 대한 한도설정 및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li> <li>·ALM 기법</li> <li>·보험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차입 또는 자본확충에 대한 약정</li> </ul>
보험계약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별 담보하는 리스크에 대한 간략한 설명</li> <li>·각종 리스크 집중 및 이에 대한 경감 방법</li> <li>·보험회사의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증</li> <li>·보험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이 귀속되는 방법</li> <li>·보험부채에서 발생하는 순현금유입·유출의 시기에 대한 정보</li> <li>·해약 옵션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설명</li> <li>·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목시적인 평균할인율</li> </ul>
보험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가 경영진의 시각을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리스크 관련 정보가 내부정보와 일관되어야 함</li> <li>·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li> <li>·보험리스크 측정 방법 및 동 방식의 장단점</li> </ul>
민감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수의 변동이 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민감도</li> <li>·민감도 효과가 비선형인 변수에 대한 정보</li> <li>·중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민감도 분석의 장·단점</li> </ul>
보험 리스크 의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빈도, 높은 심도의 사건에 대한 계약(예: 지진)</li> <li>·단일 보험사고가 다수의 보증과 연관되는 계약(예: 테러)</li> <li>·예상치 못한 추세의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사망률, 계약자행동)</li> <li>·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계약자 옵션 행사시 익스포저</li> <li>·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나 법률리스크</li> <li>·서로 다른 리스크간 상관성 및 상호의존성</li> <li>·중요한 비비례(non-linearities)계약(예: stop-loss, 초과손실)</li> <li>·지역적·분야별 집중도</li> </ul>
보험금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금, 비정상적인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진전 추이</li> </ul>
이자율 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자율과 해약 간의 관계</li> <li>·이자율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약자와의 리스크 공유</li> <li>·재보험, 신용보험에 대한 신용리스크</li> </ul>
내재파생상 품의 이자율 리스크, 시장리스크 익스포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회사가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을 경우, 동 상품에 내재한 이자율·시장리스크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li> <li>·연금 보증 계약에 대한 이자율리스크 및 사망률리스크</li> <li>·최저사망보험금 계약에 대한 시장리스크</li> <li>·이자율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분석</li> <li>·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li> </ul>

### 3. 합동실무작업반에서 제시된 기준

2001년 4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국제증권감독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가 후원하는 합동실무작업반(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 MWG)에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공시강화를 위한 권고안<sup>16)</sup>을 발표하였다.

#### 가. 리스크 공시의 기본 원칙

합동실무작업반에서는 공시의 목적을 시장규율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자원의 적정배분을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투명성 강화는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판단력을 높여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합동실무작업반에서 제시한 공시의 3대 원칙은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간 균형, 공시가 금융기관의 내부 리스크평가 및 관리방법과 일치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기말 정보 이외에 기중 리스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리스크 공시에 대한 권고사항

##### 1) 질적 정보의 공시

---

16) 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 *Financial Report of the 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 on Enhanced Disclosure*, Apr. 2001.

질적 정보에 대한 공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및 관리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재무리스크 익스포져, 관리방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계량화되지 않는 익스포져나 활동에 대한 설명, 양적 데이터의 범위 및 특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2) 양적 정보의 공시

가) 시장리스크

모든 금융회사는 트레이딩계정의 시장리스크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익스포져 총량과 리스크·자산별로 세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 포트폴리오에 대한 VaR, 1일 및 14일 VaR, 기중 VaR 값의 최고, 최저, 중간치 공시가 필요하며,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추정치와 실제치와의 비교 등 위험-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산, 부채 및 난외계정(off-balance sheet)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체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 공시도 요구된다.

<표 III-4> 합동실무작업반의 리스크유형별 VaR 공시 권고안

리스크 유형	상	중	하	기말
환율	**	**	**	**
주가	**	**	**	**
채권	**	**	**	**
상품	**	**	**	**
분산효과	**	**	**	**
합산 VaR	**	**	**	**

주: 1일 VaR 값은 신뢰수준 95%. 14일 VaR 값은 신뢰수준 99%로 측정  
 자료: MWG(2001)

## 2) 유동성리스크

합동실무작업반에서는 유동성리스크 공시를 위해 3대 자금차입자에 대한 단기자금조달비율 등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 3) 신용리스크

모든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에 포함되는 항목은 고객별·상품별 신용 익스포져 규모, 신용평가등급별 익스포져, 상계 및 담보 등 신용보완수단, 주요 부문별 신용 익스포져의 만기구조 등이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은 신용 익스포져에 대한 기본 정보로서 익스포져 범주별로 무수익여신, 총당금, 대손상각금액의 공시를 권고하고 있다.

<표 III-5> 합동실무작업반의 잔존만기별 신용 익스포져 공시 권고안

만기 유형	유가증권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계약의 잔존만기	종료옵션의 만기
6개월 미만	**	**	**
6개월 ~ 1년	**	**	**
1년 ~ 5년	**	**	**
5년 이상	**	**	**

자료: MWG(2001)

<표 III-6> 합동실무작업반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공시 권고안

신용등급	유가증권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AA- 이상	**	**
A+ ~ BBB-	**	**
BB+ ~ BB-	**	**
B+ ~ B-	**	**
B- 이하	**	**
무등급	**	**

자료: MWG(2001)

<표 III-7> 합동실무작업반의 신용 익스포져 규모 공시 권고안

리스크 유형	상계 후 가치	신용보완 후 가치
유가증권	**	**
업종/유형1	**	**
업종/유형2	**	**
.....	**	**
유가증권 소계	**	**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	**
환매약정 및 신용대출	**	**
파생상품계약의 익스포져	**	**
재보험의 익스포져	**	**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소계	**	**
합계	**	**

자료: MWG(2001)

<표 III-8> 합동실무작업반의 보고 기간 동안의 신용손실 공시 권고안

신용 유형	대출	유가증권	거래상대방	재보험	합계
업종/유형1	**	**	**	**	**
업종/유형2	**	**	**	**	**
.....	**	**	**	**	**
.....	**	**	**	**	**
메모 사항:					
채무불이행	**	**	**	**	**
대손충당금	**	**	**	**	**
대손상각	**	**	**	**	**
손실준비금	**	**	**	**	**

자료: MWG(2001)

#### 4) 보험리스크

합동실무작업반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리스크 공시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는데, 주로 준비금적정성, 가격적정성, 손해율 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표 III-9> 합동실무작업반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질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스크 익스포저 현황 및 관리방안</li> <li>·계량화되지 않은 익스포저에 대한 설명</li> <li>·전체 및 부문별 리스크관리 대상 익스포저의 특성, 규모의 추이</li> </ul>	
양적정보	시장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트폴리오별 1일 및 14일 VaR</li> <li>·기중 VaR의 최고, 최저, 중간치</li> <li>·예상추정치와 실제손익과의 비교</li> <li>·금융기관 전체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li> </ul>
	유동성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대 자금차입자에 대한 단기자금조달비율 등 자금조달 집중도</li> </ul>
	신용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문별·고객별·상품별 신용 익스포저</li> <li>·상계, 담보 등 신용보완수단 반영 후 익스포저 현황</li> <li>·신용평가등급별 익스포저 현황</li> <li>·부문별 신용 익스포저의 만기구조</li> <li>·부문별 무수익여신, 대손상각, 충당금 현황</li> </ul>
	보험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해보험에 대한 준비금적정성, 가격적정성, 손해율</li> </ul>

#### 4.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제시된 기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정보공시에 관한 원칙을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2002년에는 보험회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주로 판단 기준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2004년에는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2005년에는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에 대한 공시 기준을 발표하였다.

<표 III-10>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시에 관한 원칙

공표일	제목	개요
2002. 1	보험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정보공시의 판단기준 및 정보의 범위
2004.10	손보사 및 재보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실적과 리스크에 관한 공시 기준	책임준비금을 중심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기술
2005.10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에 관한 공시 기준	투자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기술

### 가. 보험회사 공시에 관한 지침

2002년 1월 국제보험감독자협회 산하 공시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Enhanced Disclosure)에서는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보험회사의 공시 지침<sup>17)</su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보험회사가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정보의 요건으로서 질적측면에서 관련성, 적시성, 접근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공시되어야 할 정보로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방식, 회계정책과 관련된 정보, 경영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 1) 재무상태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부채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 및 특성 등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가 필요하다. 자산에 관한 정보는 투자포트폴리오 분류, 자산의 가치평가 관련 가정, 부채와의 매칭, 담보 등 사용이 제한된 자산, 보고 기간 중 투자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이 유용하다.

부채에 관한 정보는 부채의 금액, 시기 및 특성, 책임준비금 산출 가

17) IAIS, *Guidance Paper on Public Disclosure by Insurers*, January 2002.

정, 보증별·유형별 책임준비금 구분, 재보험 고려 전·후 책임준비금, 주요 부채가 불확실할 경우 이에 대한 특성이 중요하다. 자본의 경우, 규제자본 또는 지급여력, 자본구조 및 구성항목별 금액, 자본의 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2) 재무성과

수익성 및 변동성을 포함한 재무성과의 공시는 시장참여자들이 장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손익, 현금흐름 상태, 자본이익률, 자산이익률, 자본변동 상태, 주주배당 및 계약자배당, 보험종목별, 지역별 구분 보고, 항목별 투자수익률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진단과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 등이다. 또한, 판매채널을 포함한 언더라이팅 전략, 보험사고 특성, 빈도 및 심도, 동일사건에 대한 사고 합산 처리 기준 등에 대한 중요 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유용하다.

## 3) 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방식

리스크 익스포저, 리스크관리 전략 및 전략의 유효성 등은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 이와 관련한 항목은 잠재적 환경변화에 대한 손익민감도, 리스크 수준 대비 수익의 적정성, 위기상황시 보험금 지급 능력 등이 포함된다

각 리스크 분야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이 리스크 익스포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리스크관리 정책, 리스크 발생 원천, 리스크관리 및 통제 방식, 재보험, 파생상품, 증권화, ART 등 리스크관리·전가·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 가정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등이 해당된다.

#### 4) 정보 산출 방식

회계처리방식은 국가간·보험회사간 상이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상호 비교하여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산출방식 및 사용된 가정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5) 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보험회사의 효율성, 전반적인 강점, 전망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분야, 경영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도 요구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시장내 위치, 이사회 조직 및 경영진, 인센티브 및 소유 체제, 제3자와의 전략적 제휴, 아웃소싱 등이 해당된다.

### 나.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 공시에 대한 표준안

2004년 10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공시강화위원회(Enhanced Disclosure Subcommittee)에서는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sup>18)</sup>을 제시하였다. IAIS는 2006년에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있다.

#### 1) 종목별 공시

손해보험의 경우 주요 종목별로 재무성과가 공시되어야 하는데, 종목구분은 자동차, 해상, 화재, 신용, 배상책임, 상해 및 건강, 기타 손해보험, 비비례재보험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18) IAIS, *Standard on Disclosures Concerning Technical Performance and Risks for Non-Life Insurers and Reinsurers*, October 2004.

## 2) 보험영업에 대한 분석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리스크관리 방식과 일관된 언더라이팅 목적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격적정성, 준비금적정성, 사고 통계, 리스크 집중, 재보험 및 자본과 같은 부문에 대해서도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각 항목별 구체적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등 가격적정성과 관련된 정보, ② 준비금적정성과 관련된 정보인 보험금 진전 데이터, ③ 사고발생빈도, 평균사고비용 등 보험사고 관련 과거 경험 데이터, ④ 지역별·분야별 리스크 집중 관련 정보, ⑤ 신용경감수단에 대한 설명, 재보험 적정성 및 비용, 보험금 수령, 출재한 재보사의 신용도 등 재보험 및 기타 리스크 경감 관련 정보, ⑥ 자본의 정의, 과거 비율, 보통주·우선주·후순위채 등 자본의 순도, 자본적정성과 관련된 정보

## 3) 주요 가정 및 불확실성 측정 방법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 방식 및 이에 사용된 중요 가정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인플레이션 등 시장변수 관련 중요 가정들, 사고발생빈도·심도 등과 같은 기업고유변수 관련 중요 가정들이며, 자산과 부채 측정에 사용된 방법론과 주요 데이터 출처, 서로 상이한 가정들 간의 상관관계 등도 해당된다.

## 4) 민감도, stress testing 및 시나리오분석

보험회사에 내재하는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변수의 변동효과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stress testing 및 시나리오분석이 필요하다. 변동성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민감도분석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평균사고 규모 1% 변동이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정도
- ② 인플레이션을 10% 변동이 보험부채에 미치는 효과
- ③ 투자수익률 10% 변동의 효과
- ④ 보험부채 계산을 위해 사용된 할인율 10% 변동의 효과

#### 다.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 공시에 대한 표준안

2005년 10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공시강화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 및 성과에 관한 표준 공시안<sup>19)</sup>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 목적, 정책과 관리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투자전략과 목적, 성과관리, 투자상품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데,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stress testing, 민감도분석 실시 여부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민감도분석을 실시할 경우 사용된 가정들의 유형과 프로세스,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관한 정보, 전사적 리스크관리모형에 대한 모수 유형, 측정 방법, 기간 경과에 따른 모형 성과, 모형 테스트, 방법론 검증 등의 정보 공시가 요구된다.

##### 2) 자산군별 분류, 설명 및 특성

보험회사는 자산을 유사한 특성과 리스크를 가진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자산그룹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 IAIS, *Standard on Disclosures Concerning Investment Risks and Performance for Insurers and Reinsurers*, October 2005.

- ① 자산인식 기준, 구분 기준, 가치측정시 사용된 방법론 및 가정들,  
 ② 채권의 신용등급별 구분 및 잔여만기별 분류, ③ 대출의 유형별·담보유무별 분류, ④ 부동산의 유형별·지역별 분류, ⑤ 헤지 또는 투자 등 파생상품 목적별 구분, 주요 유형별 구분

### 3) 성과측정

보험회사의 투자성과는 계약자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는 자산군별 투자실적과 주식, 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해 실현·미실현 손익, 관련 경비 등의 항목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표 III-1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질적 정보	·재무상태,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방식, 정보산출에 사용된 방법론 및 가정들, 경영관리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설명 ·투자목적, 정책 및 관리방식 설명 ·자산군별 분류 기준 및 특성에 대한 설명
양적 정보	·자산군별 신용등급 분포, 만기구조 분포 ·대출유형별·담보유무별 대출금액, ·부동산의 유형별·지역별 분류 ·파생상품 목적(헤지/투자)별 구분, 주요 유형별 구분 ·자산군별 투자실적 ·자산항목별 실현·미실현손익·관련 경비 등 ·기말 리스크 규모, 기중 최고·중간·최저 리스크 규모 ·민감도분석
보험 리스크	·손해보험에 대한 준비금적정성, 가격적정성, 보험사고통계, 리스크집중, 재보험 및 기타 리스크 경감수단 ·중요 가정 및 불확실성 측정 방법 ·민감도,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 4) 리스크 익스포저

주가, 이자율, 신용, 유동성, 집중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

해야 하는데,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말뿐만 아니라 기중 최고, 중간, 최저 리스크 규모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민감도 분석과 난외계정의 신용리스크 총량에 대한 공시도 요구된다.

## 5. 평가

공시요건은 새로운 재무건전성규제 체제인 pillar 1과 pillar 2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변동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요건은 범위 측면에서는 매우 방대하며, 수준 측면에서는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양한 내용과 높은 공시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한 공시 권고안은 상당부분 공통 분모를 포함하고 있다.

공시원칙으로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간 균형,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정책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질적 정보로는 각종 리스크관리정책 및 관리 모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요 가정 및 불확실성 등에 관한 설명을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다. 양적 정보로는 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에 관한 각종 익스포저와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경우 준비금적정성·가격적정성·손해율 등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리스크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공시안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과 재무건전성 요건,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상세한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공시 내용의 통합정도와 양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좀더 상세하고 표준화된 공시요건이 필요

하다.

둘째, 중요성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도한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유용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제시한 공시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일부는 중복되고 있다.

셋째, 제시된 수준의 공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프로세스 및 IT시스템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 일부 자료는 준비하여 감사받는 데 어렵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적시 제공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보험회사의 민감한 가격정보와 기밀사항(confidentiality)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산업에서 요구하는 공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서 타 금융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대형 보험회사들조차도 방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전달하는 적절한 방식을 찾기 어렵다. 특히 가정들과 이들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유용성은 낮을 수 있다. 공시되어야 할 가정들이 너무 지나치게 통합될 경우 의미 없는 정보를 산출하는 반면, 너무 과도한 세분화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과도한 정보 및 기업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게 만들 것이므로, 가정들에 관한 공시는 이것들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가 제시한 표준안이 큰 체제 측면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시된 수준에서 공시항목 선택 및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2>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된 공시 기준 비교

구분	내용	신BIS	IFRS 4	MWG	IAIS
경영일반	회계원칙				○
	경영 및 지배구조				○
자본구조 및 자본적정성	자기자본 구조	○			○
	자본적정성평가방법	○			○
	리스크별 요구자본	○			○
	자기자본비율	○			○
공시원칙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균형	○	○	○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정책과 목적	○	○	○	○
	부문별 리스크관리 대상	○	○	○	○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리 정책	○	○	○	○
	신용리스크 관리모형의 특징	○	○		○
	부문별, 상품별 익스포저	○	○	○	○
	신용보완수단반영후 익스포저	○	○	○	○
	부실채권,대손상각 및 충당금	○	○	○	○
	신용평가등급별 익스포저	○	○	○	○
	만기구조별 익스포저	○	○	○	○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	○	○	○	○
	시장리스크 평가모형의 특징	○	○		○
	금리변화로 인한 경제적가치 변동 예상액	○			○
	트레이딩 부문의 VaR	○	○	○	○
	추정 VaR값과 실제값 비교	○	○	○	
	전체 시장리스크에 관한 정보*	○	○	○	○
유동성리스크	측정지표 및 관리 기준	○		○	
	주요 단기자금 자금조달처 및 집중도			○	
운영리스크	관리목적, 정책, 측정방식	○			
보험리스크	보험리스크 관리 정책		○	○	○
	보험종목별 리스크특성		○		○
	준비금적정성, 가격적정성, 손해율		○	○	○
	재보 및 리스크경감방법		○		○
	보험리스크 집중		○		
가정 및 불확실성, 변동성 분석	내재파생상품리스크		○		○
	가정 및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		○		○
	민감도, stress testing 및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설명	○	○		○
	민감도, stress testing 및 시나리오분석 측정 결과	○	○		○

주: \*는 자산, 부채 및 난외계정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의 비트레이딩계정을 의미

## IV. 선진국 리스크 공시 관련 규제 및 사례

### 1. 선진국의 리스크 공시 관련 규제

#### 가. 미국

##### 1) 증권거래 및 회계 관련 규제

미국의 공개 기업들은 공시와 관련하여 증권감독원(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Form 10-K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공시이다. Form 10-K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정형화된 양식으로서, 여기서 시장리스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양적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동 양식에 의하면 Part I의 1A 부문에서 경영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risk factors)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Part II의 7A에서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양적 공시 및 질적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리스크에 대한 질적 정보는 익스포저 종류, 이들의 변동양태 및 관리방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양적 정보는 ① 장래현금흐름에 대한 민감도 분석, ② VaR, ③ 리스크 민감 상품에 대한 정보를 테이블로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엔론, 월드콤과 같은 대형 회계부정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내부통제의 강화를 위해 2002년에 회계제도 개혁법안인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공시 관련 통제 및 절차(Disclosure Control & Procedure: DC&P)”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에게 사업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시통제 및 절차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였으며, 사업보고서에 “재무보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 ICFR)”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인증받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인증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IV-1> 미국 SEC의 10-K 양식

- 
- Part I
1. 경영
  - 1A. 리스크 요인(Risk Factors)**
  - 1B. 미해결된 위원회의 코멘트
  2. 부동산
  3. 진행중인 소송 사건
  4. 주주명부
- Part II
5. 보통주 관련 사항
  6. 주요 재무지표
  7. 기업경영에 대한 진단과 분석(MD&A)
  - 7A. 시장리스크에 대한 양적 공시 및 질적 공시**
  8.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9. 회계변경
  - 9A. 통제 및 프로세스
  - 9B. 기타 정보
- Part III
10. 이사 및 집행임원 등기
  11. 임원진 보수
  12. 스톡옵션 등 주주관련 사항
  13. 특별관계 및 관련 거래
  14. 주요 회계 수수료 및 서비스
- Part IV
15. 제출 자료 목록 리스트
- 

자료: <http://www.sec.gov>

사베인-옥슬리법의 도입에 따라 MD&A 부속 내용으로서 회사의 난외계정계약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관련 규정(Regulation S-K)을 개정하여 2003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 방식은 테이블 형식으로 난외계정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급기간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lt;표 IV-2&gt; 미국 증권거래법의 난외계정계약에 대한 공시 양식

계약의무사항	지급기간				
	총계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장기부채					
자본리스계약					
운용리스					
구매의무					
기타 장기부채					
총계					

자료: <http://www.sec.gov/rules/final/33-8182.htm>

이러한 법 제정 및 규제를 통해 리스크수준에 근거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적절히 시장에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증권거래소는 사베인-옥슬리법에 의한 공시통제를 위해 회계담당 임원, 법규담당 임원, 리스크관리담당 임원, 업무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시위원회(Disclosure Committee) 설립을 권고하였다. 공시위원회의 업무는 감독당국 제출 자료, 주주 공시 자료, 애널리스트 제공 자료, 신용평가기관 및 대출기관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회계제도의 개혁을 통해 회계정보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거래법에서 이에 대한 시장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 2)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규제

보험회사는 NAIC의 감독 목적 회계원칙(Statement of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영업활동,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추정, 중요한 추정 및 특정 부문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취약성 등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NAIC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한 RBC보고서, RBC계획서 등은 기밀서류로 취급되며, RBC비율이 보험회사의 서열화를 위한 정보로 이용되어 일반인을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보험회사의 RBC 수준이나 계산 결과의 일부가 공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나. 유럽

### 1) 국제회계기준 적용

유럽의회에서는 2002년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회계규정을 작성, 승인함으로써 유럽의 기업들은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유럽 28개국의 8천여개 상장회사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2개국에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대형보험회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2005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주요 회계원칙 및 장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였다.

영국의 기업들은 회사법(Companies Act 1985)의 Schedule 4 Section 226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시하고 있다. 미국이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Turnbull Report,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를 통해 재무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외부감사의 독립성, 리스크관리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하였다.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에서 작성한 Combined Code에서는 이사회가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주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점검내용은 재무, 운영, 법규준수 및 리스

크관리 시스템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약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EU의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IFRS의 적용을 위해 기존의 재무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RS)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였다. FRS 25는 공시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업이 보유하거나 발행한 금융상품에 관한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RS 25는 기존 FRS 13을 대체하는 기준으로서 신용리스크에 대한 양적 공시를 새롭게 요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FRS 13보다 덜 규범적이어서 회사들이 좀더 탄력적으로 공시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RS 27에서는 생명보험계약과 관련된 옵션과 보증의 조건, 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가정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FRS 27은 생명보험회사의 2005년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영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이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이행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 2) 생명보험회사의 내재가치 보고

유럽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경영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 보험회사 인수합병시 매수하는 회사의 가치산정을 위해 개발한 내재가치(Embedded Value: EV)<sup>20</sup>이다. 1990년대 들어 투자자들이 “감독목적의 재무제표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1992년 영국보험협회(ABI)가 생명보험회계의 새로운 기법으로 내재가치회계 지침을 작성하고, 감독목적의 재무제표와 함께 내재가치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표하게 되었다.

---

20) 내재가치 = 순자산가치 + 보유계약가치(장래 주주이익 - 자본비용)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계 보험회사가 활발한 해외진출을 함에 따라 다국적 그룹 전체의 내재가치를 합산하여 공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국적 보험회사가 진출한 유럽대륙 전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19개의 유럽 보험회사<sup>21)</sup> 재무담당최고임원(CFO)이 내재가치 산출원칙(European Embedded Value Principles: EEV Principles)을 공동으로 작성·발표하였다. EEV는 12개의 핵심적인 원칙과 65개의 관련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 3에서 “내재가치는 영위 중인 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한 후 배당가능한 이익 중 주주 몫의 현재가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risk-free rate) + 리스크마진”으로 설정하였다. 동 지표는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가치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감독회계를 보완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2005년 말부터 유럽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EEV 기준에 따라 내재가치를 산출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출방법, 할인율, 경제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등도 공시하고 있다.

#### 다. 캐나다

캐나다는 보험업법(Insurance Companies Act: ICA) 331조와 665조에서 연간재무보고서(annual financial statement)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인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에서 가이드라인<sup>22)</sup>을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감

21) AEGON, Allianz, Aviva, AXA, Credit Suisse, Fortis, Generali, Hannover Re, ING, Legal & General, Munich Re, Old Mutual, Prudential, Scottish Widows, Skandia, Standard Life, Swiss Re, Zurich Financial Services

22) 캐나다에서 가이드라인은 강제적인 적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시 벌칙은 없지만, 많은 보험회사들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독당국에 제출하는 선임계리사보고서(Appointed Actuary's Report), 동적자본적정성테스트보고서(Dynamic Capital Adequacy Test Report)는 기밀자료로 취급되어 오직 OSFI에게만 제공된다. 또한, 최저자본요건 산출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 Surplus Requirement) 역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최종적인 재무건전성비율 수준만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생명보험분야(D-1A), 생명보험의 이원분야(D-9), 손해보험분야(D-1B) 및 과생상품분야(D-6)가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내용은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 등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

### 1) 생명보험분야

캐나다의 생명보험분야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1997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양적 공시, 리스크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양적 공시 측면에서 특정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최저수준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각각에 대한 공정가액 및 관련된 이연손익 및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한다.

리스크관리 및 통제와 관련한 공시 내용으로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중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자율리스크, 신용리스크, 재보험리스크, 환율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기타리스크 등이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하며, 중요 익스포져 및 손실 등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캐나다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시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와 관련한 중요 리스크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 사망률 및 입원율리스크, 유지율리스

크, 투자수익률리스크, 사업비리스크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정책 즉,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검토, 한도승인, 실행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경험사망률과 관련된 리스크, 리스크 및 가격 세분을 위한 언더라이팅 정책, 가격 및 배당 정책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 2) 생명보험 이원분야

캐나다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이원(Source of Earnings: SOE)에 관한 공시는 2004년 사업보고서 작성 시점부터 적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예정손익과 실제손익간 차이를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원의 공시는 생명보험산업에 내재한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이 수익의 질, 잠재적 변동성 및 지속성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감독당국에서는 사업보고서의 주거나 다른 공시 관련 부분, 또는 기업경영에 대한 진단과 분석(MD&A)와 같은 공개 자료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표 IV-3> 캐나다의 생명보험 이원분석 공시 양식

	당기	전기
보유계약에 대한 기시 이익 추정치(최선추정치에 기초)		
신계약 효과		
실제손익과 추정치와의 차이		
경영조치와 가정 변경		
기타		
영업이익		
자기자본 이익		
세전 이익		
세금		
순이익		

자료: OSFI(2004b)

캐나다의 이원분석은 GAAP의 공시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된 생명보험회사의 이익을 다양한 원천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법론으로서, 감독당국은 최저수준의 공시양식을 제공할 뿐 상세한 사항은 회사의 재량에 속한다.

### 3) 손해보험분야

캐나다의 손해보험회사 역시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에 대해 포트폴리오별 시가, 잔여만기별 익스포저 및 부실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책임준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더라이팅리스크, 대재해리스크, 재보험리스크 등에 관한 공시가 필요한데,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 리스크 측정 방식 및 측정 빈도와 같은 내용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생명보험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용리스크, 환율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정책, 모니터링 및 통제 절차, 리스크 측정 및 요율세분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 2. 선진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

### 가. 조인트포럼의 재무공시 조사결과

1999년 6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의 국제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재무리스크 공시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해 다양한 금융회사로 구성된 조인트포럼을 구성하였다<sup>23)</sup>. 동 작업반의 보고서는 Fisher II 리포트로

23)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

명명되었으며, 12개국 66개 금융회사(38개 은행, 22개 보험회사, 6개 증권사)<sup>24)</sup>의 2002년 사업보고서(annual report)를 대상으로 주요 리스크 영역에 대한 재무공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시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sup>25)</sup>.

### 1) 트레이딩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

조사대상 은행과 증권사 모두 VaR 값을 공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자율, 주가, 환율, 상품등과 같은 리스크유형별로 리스크량을 공시하였으며, 기말 값뿐만 아니라 기중 최고, 중간, 최저 값도 공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트레이딩 활동에 대한 시장리스크를 공시하는 회사는 시나리오분석과 stress testing과 같은 리스크관리 및 측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는 분석결과까지도 공시하였다.

VaR 추정치를 공시한 금융회사 중 1/3 정도만이 리스크와 수익간 비교를 위해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공시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비트레이딩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

비트레이딩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은 VaR보다 민감도분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과 부채간 이자율·환율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민감도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VaR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모두 결과 값을 발표하는 반면, 민감도

---

의회(IAIS) 등 국제감독기구의 후원하에 금융회사로 구성된 작업반

24) 66개 금융회사 중에는 본고에서 선진사례로 조사한 Citi Group, ING Group, AIG, Sun Life Financial 4사 모두 포함됨.

25) The Joint Forum, *Financial Disclosure in the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ectors: Issues and Analysis*, May 2004.

분석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일부만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자산-부채의 불일치가 핵심리스크이므로 주로 ALM에 관한 질적 공시를 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들은 민감도분석 결과를 공시하기도 하였다. VaR 값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기말 기준 뿐만아니라 기중 최고, 중간, 최저 값도 공시하는 반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는 회사들은 기말 기준 값만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는 공시 목적으로 의미 있는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자금차입과 관련한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질적 공시는 매우 다양하다. 조사대상 은행과 증권사 모두와 6개국에 속한 보험회사는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한 회사 중 대다수는 제한된 수준의 양적 공시를 하고 있으며, 차입의존도가 높은 3개 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차입비율을 공시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회사는 사전에 보험료를 수령하여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투자하는 업무의 특성상 유동성리스크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sup>26)</sup>.

### 4)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는 대출, 채권, 미수수익 등과 같은 상품과 거래상대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여러 분야에 분산 공시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였다. 조사대상 모든 은행들은 대출유형별로 익스포져 규모를 공시하였으며, 일부는 산업별·지역별 분포도 공시한 반면,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은 보유채권에 대한 공시를 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감독당국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

---

26) 계약자 해약이 속출하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

는 최저수준의 유형별 구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들은 최저수준 이상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담보나 손실경감약정과 같은 대출 관련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국가리스크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가 상계<sup>27)</sup> 후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보험회사들은 신용리스크에 대해 양적 공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조사대상 중 약 50% 정도의 보험회사가 보유채권이나 모기지대출에 대한 공시를 하며, 40% 정도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하였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신용등급별·만기구조별 테이블 형식으로 신용 익스포저를 공시하였으며, 조사대상 모든 은행들은 연체금액, 무수익여신, 대손상각금액, 대손충당금 등 신용익스포저 관련 사항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만기 관련 정보 공시는 은행 60%, 보험회사 50% 미만, 증권사 100% 수준으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권사와 은행이 높았다. 재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신용등급별로 재보험회사의 익스포저를 공표하였다. 작업반에 의하면, 2001~2002년 동안 신용리스크를 공시하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보험리스크

조사대상 손해보험회사들 중 대다수가 지급보험금 및 이와 관련된 비용, 발생손해 및 손해사정비용, 손해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수의 보험회사만이 가격적정성에 대해 공시하였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수입보험료, 준비금 및 손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추세에 대해 부연 설명하였다.

---

27)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계정과 수입계정을 차감한 후의 순액

### 나. Citi Group 사례

Citi Group은 미국 증권거래법의 10-K 양식에 따라 재무제표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일반에게 공시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Citi Group이 산하 자회사를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룹의 공시위원회(Disclosure Committee)에서는 외부공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Citi 그룹에서는 자본비율, 자본의 항목별 구성내역을 공시함으로써 자본조달 내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4> Citi Group의 자본 관련 공시 사례

(단위: 백만 달러, %)

		2005	2004
자본비율	기본자본(tier 1)	8.79	8.74
	자본합계(tier 1+tier 2)	12.02	11.85
	보통주	7.46	7.29
자본의 항목별 구성 내역	<b>기본자본</b>		
	보통주	111,412	108,166
	영구적우선주	1,125	1,125
	상환우선주	6,264	6,209
	연결자회사의 소수주주지분	512	937
	차감: 영업권	33,130	31,992
	.	.	.
	.	.	.
	<b>기본자본 소계</b>	<b>77,824</b>	<b>74,415</b>
	<b>보완자본</b>		
	대손충당금	10,602	10,785
	후순위채	17,368	15,383
	미실현평가이익	608	384
차감:비연결 자회사투자의 50%	-	(68)	
<b>보완자본 소계</b>	<b>28,578</b>	<b>26,484</b>	
<b>자본합계(기본+보완)</b>	<b>106,402</b>	<b>100,899</b>	

자료: Citi Group, 2005 Annual Report.

10-K 양식 Part I 1A 리스크 요인(risk factors)에서는 Citi 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2005년 사업보고서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서 경제여건, 신용·시장 및 유동성리스크, 경쟁상황, 국가리스크, 운영리스크,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평판 및 법률리스크, 감독 및 규제 측면에 대해 기술하였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위험자본(risk capital)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다. Citi 그룹은 위험자본을 1년 내에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 규모로 정의하며 신뢰수준은 99.97%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룹 차원에서 성과평가 및 자원배분을 위해 위험자본에 대한 수익률과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다.

<표 IV-5> Citi Group의 위험자본 관련 공시 사례

(단위: 10억 달러, %)

	2005	2004	2003
신용리스크	36.1	33.2	28.7
시장리스크	13.5	16.0	16.8
운영리스크	8.1	8.1	6.1
보험리스크	0.2	0.2	0.3
부문간 분산효과	(4.7)	(5.3)	(5.2)
<b>총 합계</b>	<b>53.2</b>	<b>52.2</b>	<b>46.7</b>
위험자본수익률(RORC)	38	35	39
투자자본수익률(ROIC)	22	17	20

주: RORC=순이익/위험자본, ROIC=(순이익-기회비용)/(위험자본+무형자산)  
 자료: Citi Group, 2005 Annual Report.

또한, 각 사업부문별·상품별로 평균적인 위험자본, 위험자본에 대한 수익률,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여 공시하고 있다.

&lt;표 IV-6&gt; Citi Group의 부문별 수익률 공시 사례

(단위: 백만 달러, %)

		2005	2004	2003
미국내 카드사업	위험자본	5,774	4,125	3,295
	위험자본수익률	48	86	87
	투자자본수익률	20	28	-
미국내 소비자대출	위험자본	3,280	2,689	2,137
	위험자본수익률	59	62	76
	투자자본수익률	34	30	-
기업 및 투자은행(IB) 업무	위험자본	21,226	19,047	16,266
	위험자본수익률	32	11	33
	투자자본수익률	24	8	-
.	.	.	.	.
.	.	.	.	.

자료: Citi Group, 2005 Annual Report.

Citi 그룹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리스크 유형별 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용리스크의 경우 이에 대한 정의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 관련 신용리스크와 기업 관련 신용리스크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유형별·지역별 포트폴리오,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금액 및 연체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업종별·지역별 포트폴리오 분포를 공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용리스크 헤지정책, 파생상품 및 외환에서 발생하는 신용익스포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트레이딩 자산과 비트레이딩 자산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비트레이딩 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율 100bp 변동시 손익 변동분을 공시하며, 트레이딩 자산에 대해서는 VaR(99%, 1일 기준) 값을 공시하고 있다.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의, 관리 절차, 정책 및 보고, 정보보호 및

대재난 복구 프로그램(Continuity of Business)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유동성관리 측면에서는 자본조달 내역, Citi 그룹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 자산유동화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 다. ING Group 사례

ING 그룹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험 및 은행 부문에 대한 그룹 전체의 주요 재무성과,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무정보로서 은행부문과 보험부문을 분리하여 리스크관리 정책, 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정보와 구체적인 익스포저 규모에 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NG는 내부모형<sup>28)</sup>을 사용하여 경제적 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나, EU 기준에 의한 자본구조<sup>29)</sup>도 공시하고 있다. ING 그룹의 2005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리스크를 계리·언더라이팅 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로 세분하며, 계리 및 언더라이팅리스크를 핵심리스크로 설명하고 있다.

핵심리스크로 간주하는 계리 및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황,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민감도분석 결과도 공시하고 있다. 보험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사망률, 입원율, 사고율이 각각  $\pm 10\%$  변동되었을 경우, 순이익 및 주주지분에 대한 효과를 리스크경감 전과 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책임준비금은 계약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계약과 일반적인 생명보험계약으로 구분하여, 산출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준비금적정성테스트 결과에 대한 설명도 부가하고 있다. 손해보험 부문에 대한 리스크허용한도는 세후이익의 2.5%(1억 7천만 유로)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부문에 대한 리스크허용한도

---

28) AA 신용등급 획득을 목적으로 한 모형

29) 가용자본, 요구자본, 잉여자본,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

는 1건당 2.2백만 유로, 전체의 경우 7억 5천만 유로임을 밝히고 있다.

<표 IV-7> ING 그룹 보험부문의 보험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공시

(단위: 백만 유로)

		순이익에 대한 효과		주주지분에 대한 효과	
		리스크경감전*	리스크경감후	리스크경감전	리스크경감후
사망률	+10%	-82	-61	-85	-63
	-10%	80	61	83	64
입원율	+10%	-70	-66	-70	-67
	-10%	70	66	71	67
P&C	+10%	-125	-98	-130	-101
	-10%	125	98	130	101

주: \*는 재보험출재 등

자료: ING Group, 2005 Annual Report.

ING 그룹 차원<sup>30)</sup>에서 Market Value at Risk(MVaR)에 의해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단위는 1년, 신뢰수준은 99.95%이다. ING는 보험 부문에 대해 이자율, 주가, 환율, 부동산가격 변동시 순익과 주주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금리확정형상품의 경우 이자율 하락시 이율보증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는데, 이자율 100bp 변동시 순익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민감도분석은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 요인을 포함하여 측정되는데, 이자율변동 외에 주가, 환율, 부동산가격 변동시 순익에 미치는 효과를 공시하고 있다.

30) Asset and Liability Committee(ALCO)에서 보험사업 단위별로 한도 할당하며, Cooperate Insurance Risk Management(CIRM)에서는 분기별로 종목별 MVaR 익스포저를 통합하고 모니터링함.

<표 IV-8> ING 그룹 보험부문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공시  
(단위: 백만 유로)

변수	변동폭	순이익에 대한 효과	주주지분에 대한 효과
이자율	+1%	-68	-2,814
	-1%	-1,743	1,255
주가	+10%	59	1,072
	-10%	-80	-1,094
환율 (유로)	+10%	-81	-950
	-10%	87	1,041
부동산	+10%	509	525
	-10%	-513	-525

자료: ING Group, 2005 Annual Report.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황, 측정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고,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 분야별·지역별 집중도, 담보사항, 연체 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다.

ING 그룹 보험부문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ING 은행부문과 동일하며, 보험부문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운영리스크에 대응한 경제적 자본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감독 목적으로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측정이 요구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신BIS협약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lt;표 IV-9&gt; ING 그룹 보험부문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져 공시

(단위: %)

신용등급별 분포		분야별 분포		지역별 분포	
AAA	26.3	정부	24.0	북미	42.8
AA	23.0	금융	20.5	서유럽	39.9
A	32.8	모기지	18.8	아시아	10.2
BBB	14.3	유동화증권	15.8	남미	5.1
기타	3.6	일반산업	4.8	동·중유럽	1.8
	100.0	음식료품	1.7	기타	0.2
		화학	1.5		100.0
		자동차	1.1		
		미디어	1.0		
		기타	10.8		
			100.0		

자료: ING Group, 2005 Annual Repor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회계적 이익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EV)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ING는 2004년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통해 내재가치 측정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2005년에도 측정 결과 및 변동요인에 대한 원인을 공시하고 있다.

내재가치의 공시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보험회사의 가치변동을 보여주며, 가치변동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요인은 투자이익 발생, 유보자본의 전입, 가정치와 경험실적과의 차이, 계리적 가정의 변화 등이다.

또한, 경제적 가정 변동에 따른 내재가치 민감도분석 결과도 공시하고 있는데, 신규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  $\pm 1\%p$ , 할인율  $\pm 1\%p$ , 단기이자율 10bp 하락, 주식·부동산 투자수익률 1%p 감소, 주식·부동산 가치 10% 하락 등으로 인한 내재가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0> ING 그룹 보험부문의 내재가치에 대한 공시

(단위: 백만 유로)

생명보험 부문의 내재가치		내재가치 변동 원인		경제적 가정 변동시 내재가치 변동	
잉여자본	2,275	2004년 값	22,451	내재가치	27,586
요구자본	13,691			신규투자수익률1%하락	-2,888
순자산가치	15,964	영업추가	196	신규투자수익률1%상승	2,633
		환율효과	1,575	할인율 1%하락	2,154
장래주주이익	16,431	모델변경	338	할인율 1%상승	-1,831
자본비용	-4,810	수정된 EV	24,560	내재선물이자율	-1,471
보유계약가치	11,622			단기금리10bp하락	15
내재가치	27,586	신계약가치	805	주식/부동산수익률1%하락	-905
		투자관련변동	1,105	주식/부동산투자10%하락	-1,456
		영업관련변동	294	최저규제자본	2,398
		영업가정변동	50		
		EV이익	2,254	순효과	
		요구수익	1,907	신규투자수익률 1%하락	
		잉여자본투자수익	530	+ 할인율 1% 하락	-734
		할인율변동	804	신규투자수익률 1%상승	
		경제적가정변동	-2,030	+ 할인율 1% 상승	802
		인수부문의 EV	36		
		배당 등 자본유출	-474		
		2005 EV	27,586		

자료: ING Group, 2005 Annual Report.

### 라. AIG Group 사례

AIG 그룹 역시 Citi 그룹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10-K 양식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시장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AIG는 200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으로서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상승, 해외영업지역에서 직면한 리스크, 유동성,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과 준비금 추정의 어려움, 자연재해 및 거대재해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D&A에서 중요한 추정이 요구되는 지급보험금에 대해 손해를 추세 변수, 최근 예상손해율, 손해진전계수 등의 항목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업비율, 손해율 및 합산비율을 공시하며, 준비금진전 사항 및 장단기 특성, 추정된 준비금의 변동성과 민감도분석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이 완료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석면(asbestos)과 환경배상보험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사고처리방법, 지급보험금 추정방법, 생존율 등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부채 추정에 수반된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망률, 입원률, 해약률과 같은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는 등 부채금액의 산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준비금 산출 관련 설명을 8페이지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또한, 준비금 추정치의 변동성과 민감도분석에 대해서도 공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언더라이팅리스크 감소를 위해 1건당 급부금을 1.7백만 달러(해외), 1천만 달러(국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저보증 관련 리스크는 재보험이나 자본시장의 헤징상품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다.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의, VaR 기법(측정 기간: 1달, 신뢰수준: 95%)을 이용한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연말 기준뿐만 아니라 기중 최고, 최저, 평균치를 공시하고 있다.

<표 IV-11> AIG 손해보험부문의 시장리스크 규모 공시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연평균	연최고	연최저
합산 값	1,617	1,585	1,672	1,396
이자율	1,717	1,746	1,931	1,563
외환	130	125	139	111
주가	535	651	727	535

주: 분산효과로 인해 합산값은 이자율+외환+주가보다 작음  
 자료: AIG, Annual Report 2005.

투자리스크에 대해서는 질적 공시 및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및 잔존

만기별 익스포저와 같은 양적 공시를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용리스크 헤지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보험자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한 담보정책에 대한 설명도 부가하고 있다.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1980년대 각종 보증<sup>31)</sup>이 내재된 투자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상품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AIG는 최저사망보증금(GMDB) 관련 익스포저 규모를 공시하고 있다. GMDB 부채는 매기 추정되며, 부채 결정을 위한 가정과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성과는 5,000회의 시나리오 결과 값 사용
- ② 투자성과에 대한 평균은 영업 분야별로 3~10% 수준으로 가정
- ③ 투자성과에 대한 변동성은 영업 분야별로 10~30% 수준으로 가정
- ④ 사망률은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생명표의 60~103% 수준 예정
- ⑤ 미국 내 계약의 해약률은 계약유형 및 만기구조에 따라 0~40% 수준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 계약유형에 따라 0~20% 적용
- ⑥ 미국 내 계약의 할인율은 3.25~11% 수준을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 0~7% 적용

#### 마. Sun Life Financial 사례

캐나다의 대형보험회사인 Sun Life Financial은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활동에 수반된 리스크 중 일부 항목을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다.

Sun Life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서 법·규제 및 시장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변액연금상품에 내재한 각종 보증 요소가 갖고 있는 리스크, 동 리스크를 재보험을 통해 전가하는 헤징방법

---

31) 최저사망보증금(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s), 최저소득보증금(GMIB: 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s), 최저해약환급금(GMWB: guaranteed withdrawal death benefits) 등

및 주가, 신용리스크,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 환율, 경쟁 등이다. Sun Life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정책 및 한도, 실행체제 등을 갖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목적, 문화, 책임과 같은 체계, 중요 리스크관리 절차, 리스크 측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표 IV-12> Sun Life의 리스크분류 및 관리 방법 공시 사례

리스크 유형	상세 리스크	리스크관리 방법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	·주요 상품별로 보험부채 구분 ·자본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리스크한도에 따라 관리 ·주식 보유는 업종별·회사별로 분산 ·부동산 보유는 지역별·유형별로 분산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의 불리한 효과는 동적 자본 적정성테스트(DCAT)와 stress testing을 통해 모니터링
	이자율 리스크	·자산포트폴리오에 대해 부채 매칭 정책 수립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key rate duration" 기법 사용
신용 리스크	신용리스크	·분산요건, 지속적인 신용분석, 거래상대방 익스포저 한도설정 등 ·부실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
	출재리스크	·재보사에 대한 출재 한도 설정 및 모니터링
보험 리스크	상품설계 및 가격설정 리스크	·상품설계, 가격설정방법, 가정, 목표이익, 시나리오분석, 문서화, 내부 전문가 리뷰(peer review) 등에 대한 준법감시 시행 ·가격설정 절차에 대한 내부 감사
	위험률 리스크	·상세한 언더라이팅 절차 수립 ·언더라이팅 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리스크 정책 ·한도초과에 대한 재보 처리
운영 리스크	법·제도 및 시장행위 리스크	·강력한 준법감시 문화 정착 ·전사차원에서 준법감시 및 법률준수 모니터링
	운영리스크	·정책과 가이드라인 수립 ·잠재적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보험상품 가입

자료: Sun Life Financial, Annual Report, 2005.

Sun Life는 리스크유형을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운

영리스크로 대분류하고 있으며, 다시 각각에 대한 상세 리스크로서 시장리스크, 이자율리스크, 신용리스크, 재보험출재리스크, 상품설계 및 가격설정리스크, 위험률리스크, 법·제도 및 시장행위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있다. 각 상세리스크별 리스크관리 방법에 관한 질적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표 IV-12> 참조).

Sun Life는 계약자 급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제적·계리 적 변수에 대한 설명, 추정방법 및 민감도분석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은 최선의 추정치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역편차충당금(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 PfAD)을 부가하였고, 최선 추정치의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할 경우 역편차충당금을 많이 부과하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중요 가정은 사망률, 입원율, 해약률, 주가, 이자율, 부실자산 및 사업비가 해당되며, 각각에 대해 자사의 경험률을 사용하였는가 또는 산업전체의 통계를 활용하였는가, 장래 추세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중요 변수가 변동하였을 경우 영향에 대해서는 위험률 1%, 해약률 10%, 주가수익률 1%, 이자율 1%, 사업비 10% 변동시 손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민감도분석 실시 결과를 개략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증이 부가된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준비금 추정시 확률론적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가수익률 1% 하락시 순소득이 3천 6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ALM관리모형은 듀레이션 갭 방식으로서 1% 금리상승시 순이익은 2천 9백만 달러 증가하며, 1% 금리하락시 순이익이 1억 4천 3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Sun Life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 감소 방법에 대해 공시하고 있는데, 특정 상품에 대해 이자율, 주가,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판매상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변액연금보험, 유니버설보험, 주가지수연계보험 등 보증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리스크 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된 파생상품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다(<표 IV-14> 참조).

&lt;표 IV-13&gt; Sun Life의 경제적·계리적 가정 공시 사례

중요 변수	추정방법	영향
사망률	·회사의 5년 경험률 사용 ·경험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산업자료 사용 ·연금에 대해서는 장래 여명의 개선치를 반영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개선치 반영 안함	·생명보험의 경우 최선추정치가 1% 높아지면 순익 7천5백만달러 감소 ·연금보험의 경우 최선추정치 1% 낮아지면 순익 3천8백만달러 감소
입원율	·회사의 5년 경험률 사용 ·경험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산업자료 사용 ·장기간병, 치명적 질병보험은 재보사와 협의 하여 산출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큰 규모의 역편차준비금 부과	·입원율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최선추정치 1% 불리하게 변동하면 순익은 1천6백만달러 감소
해지율	·회사의 5년 경험률 사용 ·경험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산업자료 사용 ·가입연령, 상품, 보험료납입방법, 계약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 ·유니버설보험에 대해서는 해지 전 발생하는 보험료납입증지에 대한 가정 사용	·해약률이 낮은 경우 불리한 상품은 6차년도 해약률이 10% 감소하면 순익 9천2백만달러 감소 ·해약률이 높은 경우 불리한 상품은 6차년도 보유계약의 1%가 추가적으로 해지하면 순익 7천9백만달러 감소
주가	·주가연동상품에 대한 준비금계산은 캐나다 계리사회의 시나리오테스팅 방법을 사용하여 적정 준비금 적립	·유배당상품의 경우 주가변동의 일부분이 계약자에게 전가 ·보증 및 옵션이 내재된 변액연금의 경우 주가수익률이 1% 감소하면 순익은 2천3백만달러 감소
이자율	·캐나다계리사회의 시나리오테스팅방법을 사용하여 이자율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금 적립	·유배당보험, 유니버설보험과 같은 상품은 이자율변동의 상당부분을 계약자에게 전가 ·이자율이 1% 상승하면 순익 1억6천1백만달러 증가 ·이자율이 1% 하락하면 순익 2억4천2백만달러 감소
부실자산	·장래투자수익률 감소에 기반	·준비금에 포함된 부실자산 관련 준비금 규모는 2억2천만달러
사업비	·내부 사업비 배분방식에 의한 최근 경험 자료에 기반 ·장래 사업비 증가는 캐나다계리사회의 시나리오테스팅방법에서 사용한 인플레이션율과 일치	·유지비 10% 상승은 순익 2억1천만달러 감소

자료: Sun Life Financial, Annual Report, 2005.

<표 IV-14> Sun Life의 파생상품 활용 공시 사례

상품	파생상품 활용	사용된 파생상품
유니버설생명보험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잠재손실 제한	이자율 옵션 및 스왑
ALM관련 이자율익스포저	듀레이션갭의 민감도 관리	이자율 옵션 및 스왑
변액연금보험	실적투자에 대한 보증상품의 익스포저 관리	주가지수에 대한 풋 옵션
주가지수연계 연금보험	주식시장과 관련된 보증상품의 익스포저 관리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ALM관련 환율익스포저	부채와 자산의 통화가 다를 경우 환율변동의 민감도 감소	외환 스왑 및 선물환

자료: Sun Life Financial, *Annual Report*, 2005.

Sun Life의 경영진은 이원분석과 같은 非재무회계(non-GAAP)의 재무지표가 투자자들이 회사성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의 부속자료로서 공시하고 있다. 이원분석은 캐나다의 재무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재무적 이익의 다양한 원천을 분해하는 데 사용됨을 명시하고, 각종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기의 예정이익 대비 실제이익 변동 원인에 대한 설명 및 전기 대비 당기 변화<sup>32)</sup>에 대해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공시되고 있다.

32) 경영조치, 추정 방식 변경, 가정 변경, 신계약 효과 등에 관한 사항

## &lt;표 IV-15&gt; Sun Life의 이원분석 공시 사례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2005	2004
보유계약에 대한 기시 이익 추정치	1,540	1,433
신계약 효과	(160)	(117)
실제손익과 추정치와의 차이	367	286
경영조치와 가정 변경	131	(7)
MFS 관련 Regulatory Settlement Provisions	-	(62)
영업이익	1,878	1,533
자기자본 이익	552	451
세전 이익	2,430	1,984
세금	(531)	(263)
배당전 이익	1,899	1,721
차감:		
non-controlling interest	23	28
계약자배당	9	13
우선주배당	24	-
보통주주의 순이익	1,843	1,680

자료: Sun Life Financial, *Annual Report*, 2005.

### 3. 평가

선진외국의 리스크 공시는 감독당국의 필요성에 의한 측면과 민간부문의 요구에 의한 측면이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증권거래법, 보험업법에 의해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요구는 주로 주주, 애널리스트, 신용평가회사, 기관투자가 등 시장참여자들에게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유통시장 중심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감독당국의 규제와 민간부문의 요구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이 보험회사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회계 정보까지 공시하고 있다.

대형 선진금융회사는 주로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재무 및 리스크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조인트포럼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시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반적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보험회사보다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공시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Citi, ING, AIG, Sun Life의 리스크 공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영일반, 공시원칙 측면에서는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안에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자본구조 및 자본적정성 측면에서는 주로 내부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자본 측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업이 중심인 Citi 그룹의 경우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에 대해 질적 공시 및 양적 공시가 신BIS협약 권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험리스크의 경우, ING, AIG, Sun Life 모두 재보 및 리스크경감 조치, 중요 가정 및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내재 파생상품리스크, 민감도분석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고 있지만, stress testing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Sun Life는 사망률, 입원을, 해약률, 사업비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서도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원분석도 공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보험리스크 관련 공시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IV-16&gt; 선진금융회사의 공시 비교(2005)

구분	내용	CITI	ING	AIG	Sun Life
경영일반	회계원칙	○	○	○	○
	경영 및 지배구조	○	○	○	○
자본구조 및 자본적정성	자기자본 구조	○	○		○
	자본적정성평가방법	○	○		
	리스크별 요구자본 자기자본비율	○	○		○
공시원칙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균형	○	○	○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정책과 목적	○	○	○	○
	부문별 리스크관리 대상	○	○	○	○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리 정책	○	○	○	○
	신용리스크 관리모형의 특징	○			
	부문별, 상품별 익스포져	○	○	○	○
	신용보완수단반영후 익스포져	○	○		
	부실채권, 대손상각 및 충당금	○		○	○
	신용평가등급별 익스포져	○	○		○
	만기구조별 익스포져	○		○	○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	○	○	○	○
	시장리스크 평가모형의 특징	○	○	○	
	금리변화로 인한 경제적가치 변동 예상액	○	○		○
	트레이딩 부문의 VaR	○		○	
	추정 VaR값과 실제값 비교	○			
	전체 시장리스크에 관한 정보*	○		○	○
유동성리스크	측정지표 및 관리 기준	○		○	○
	주요 단기자금 자금조달처 및 집중도	○		○	○
운영리스크	관리목적, 정책, 측정방식	○	○		
보험리스크	보험리스크 관리 정책		○		○
	보험종목별 리스크특성			○	
	준비금적정성, 가격적정성, 손해율			○	
	재보 및 리스크경감방법		○	○	○
	보험리스크 집중				
	내재과생상품리스크			○	○
가정 및 불확실성, 변동성 분석	가정 및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		○	○	○
	민감도, stress testing 및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설명		○	○	○
	민감도, stress testing 및 시나리오분석 측정 결과		○	○	○

주: \*는 자산, 부채 및 난외계정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의 비트레이딩계정을 의미

## V. 우리나라 리스크 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 금융권의 리스크 공시제도 현황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 역시 감독당국의 규제 필요에 의한 공시 및 민간부분의 요구와 활동에 따른 공시로 구분된다. 감독당국의 규제에 의한 공시는 ① 증권거래법규 ②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규 ④ 감독업무수행에 의한 공시로 구분된다. 민간부분의 공시는 금융회사 주주, 애널리스트, 신용평가회사, 기관투자가 등이 각각의 경제적 유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채널에 의한 금융기관 공시사항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나, IV장 선진금융회사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 가. 증권거래법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증권거래소 상장 및 협회등록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① 발행시장 공시 ② 유통시장 공시 ③ 특수 공시 등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발행시장 공시에서의 공시내용은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안정조작, 시장조성 신고서 등이며, 유통시장공시에서의 공시내용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이다. 특히 기업의 주주권행사의 지원, M&A의 공정성 확보, 내부자거래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공시에서는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 상황보고, 공개매수신고 등이 주요 공시내용이다.

&lt;표 V-1&gt; 증권거래법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종류	의의	공시내용
발행시장 공시	유가증권과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안정조작·시장조성 신고서 등
유통시장 공시	투자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	-정기공시:사업·반기·분기보고서 -수시공시: 주요경영사항공시 -공정공시
특수공시	기업의 주주권행사의 지원, M&A의 공정성 확보, 내부자거래예방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 상황보고 -공개매수신고 등

#### 나.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중금사,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를 하고 있다.

&lt;표 V-2&gt;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구분	공시내용
정기공시	-조직·인력, 재무·손익, 자금조달·운용, 건전성·수익성·생산성 관련 지표, 리스크관리 정책 등
수시공시	- 거액손실·금융사고 발생, 적기시정조치 등

#### 다. 외감법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

외부감사대상인 금융회사<sup>33)</sup>가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 주석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

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다.

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수행에 의한 공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통계, 분석자료 및 감독조치내용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있다.

<표 V-3>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수행에 의한 공시

구분	공시내용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FISIS)	-B/S, P/L, 자금조달·운용, 자본적정성·건전성·수익성·생산성 관련 지표, 임직원·점포 현황
경영분석자료	-금융회사의 영업실적, 자기자본비율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부실채권, 연체율), 유동성(자금조달 동향)
감독조치내용	-조사, 감리, 검사결과 및 그에 따른 감독조치 내용

<표 V-4>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방안 추진경과 및 세부내용

추진경과	세부내용
금융회사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2004.11)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련 공시항목 확대 -공시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시목적별 공시내용 재정비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 T/F 구성(2004.12)	-
금융회사 리스크관련 공시항목확대 (2004.12~2005.1)	-작업반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survey 실시 -survey 결과에 대한 각국 감독검토
공시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에 대한 벌점관리제도 도입검토
공시항목별 공시내용 재정비	-통일공시기준의 활용도 제고를 우선 추진

33)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시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리스크관련 공시 확대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표 V-4>참조). 특히 리스크관련 공시의 확대 대상은 ①합동작업반의 리스크 부문 공시 권고 사항 ② 신BIS협약 pillar 3에 제시된 공시기준 등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2.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제도 현황

### 가.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한 공시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통일적·체계적으로 정한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체계라 할 수 있다.<sup>34)</sup> 이와 같은 경영공시는 보험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경영상태, 활동내용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적기에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영공시의 근거 및 기준 등은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업법 제6조의4(경영공시)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경영공시) 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의4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공시하되,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장 및 손

34) 경영통일공시의 경우 공시의 종류, 횟수, 주기, 기간 등 공시제도의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업종별로 정형화하였으나, 구체적 공시항목은 금융기관별 특색을 고려하여 금융업종별로 일부 조정되었음.

해보험협회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율공시 차원에서 공시항목 및 방법 등을 양 협회에 일임하고 있다. 200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영통일공시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공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도록 규정(제3조 일반원칙)하고 있다.

<표 V-5> 보험회사의 경영통일공시 기준

구분	내용	특징
근거	보험업법 제6조의 4(경영공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
	보험업 감독규정 제7-44조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 부터 3월 이내에 공시
	보험사 경영통일 공시기준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거, 보험사 경영통일공시기준 마련
공시 원칙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됨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시하여서는 안됨 -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됨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 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공시 대상	정기경영공시, 수시경영공시	외국 국내지점 제외(일부항목)
시기, 주기	-정기공시 : 연 4회(분기별) -수시공시 : 해당사유 발생 즉시 작성	

즉 ①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 ②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③ 공시자료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점 ④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V-6>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현황 및 체계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은 ① 일반현황 ② 경영실적 및 지표 ③ 재무상황 ④ 위험관리 ⑤ 기타경영현황 ⑥ 재무제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험관리는 개요 이외에 6개의 리스크부문, 즉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인 리스크라 할 수 있는 보험, 신용, 시장, 금리리스크 이외에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성리스크의 포함은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보험회사의 대량해약사태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양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운영리스크의 포함은 최근 임직원의 법규준수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는 1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자산 위주의 항목이어서 부채(책임준비금)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실정이다. 자산 항목에 대한 내용도 상세설명이 배제된 채 표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표 V-6> 보험회사의 경영공시 현황 및 체계

	세분류	세부 내용
연관 방 향	-경영방침, 연혁,주이, 조직도, 임직원 현황, 영 업,모집조직 현황	
	-자회사	연결대상자회사, 비연결자회사
경 영 실 적	-자본금,대주주현황,주식 소유현황,계약자배당,주주 배당,주식매수선택권 부 여내용,보험계약/대출거 래유의사항	
	-손익발생원천별 실적	보험부문, 투자부문, 특별계정부문
지 표	-경영지표	자본적정성(1),자산건전성(2),수익성(5),유동성(2),생산성(2),기타(2)
	-신용평가등급	
재 무 상 황	-대출금운용	대출금운용원칙,담보별대출금,업종별대출금,용도별대출금,중소기업대출금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일반계정(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특별계정
	-부동산보유현황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보유현황
	-책임준비금	일반계정, 특별계정
	-의화자산 및 부채	형태별현황, 국가별 주요자산운용현황,포지션현황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일반/특별계정),대손상각액(일반/특별계정)
	-부실 및 무수익대출	부실대출현황, 거액부실대출현황
	-과생금융상품 현황	과생금융상품거래관련 주요영업현황,장외거래의 잔존만기 및 신용환산액, 과생금융상품거래손실거래현황,신용과생금융상품거래현황, 구조화증권투 자현황
	-자산증권화현황	목적, 운영현황
	-보험계약현황	일반계정, 특별계정
	-재보험현황	수계,출계
	위 험 관 리	-개요
-보험위험관리		개념, 관리대상, 관리방법, 측정 및 평가방법
-신용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신용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저현황, 대출채권의 연체현황, 신용등급별 유가증권 익스포저현황
-시장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시장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저현황(난의계정포함)
-유동성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유동성비율/유동성 갭, 보험료적립금/대출금/유가증권, 크레딧약정 현황
-금리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금리성 자산 및 부채현황
-운영위험관리		개념, 관리방법
기 타 영 향	-자회사경영실적	자회사 재무 및 손익현황, 자회사 관련 대출채권 현황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타보험,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의 조달, 운용현황
	-내부통제	내부통제기구현황, 감사기능, 감사역할, 내부감사부서 감사방침, 감사종류 및 감사빈도
	-기관경고 및 임원문책사항	
	-수시공시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의 취득, 자회사의 추가, 타법인 출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취득 현황,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업목적변경, 현금배당결의, 감사보 고서제출, 회계 처리기준변경, 정기주주총회결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선임 및 사임 등
	-임직원 대출잔액, 사외이 사 등에 대한 대출	
재 무 제 표	-기부금 내역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현황, 기타외부에 대한 기부금현황
	-민원발생 현황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사항, 연 결재무감사고서,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주 석사항	

우리나라의 경영공시에서 나타난 리스크 공시는 <표 V-7>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공시대상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 공시는 정기경영공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시경영공시에는 리스크관련 공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시형태 측면에서 보면 비정형화된 공시형태 즉 자율공시를 지향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경영통일공시기준 부합 여부만 고려한 후 보험회사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시특징 측면에서 보면 준(準)비교공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율공시체계를 지향함으로써 보험회사간 리스크관리수준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 리스크별로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유용한 공시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체계는 리스크인식·측정·평가처럼 수직적 리스크 공시체계를 갖기보다는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유형별로 수평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V-7> 우리나라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 내용 및 특징

대상	정기경영공시	수시공시에는 리스크 공시 부문 없음
형태	자율공시 (비정형화된 공시)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관리방법 등 기술 (경영통일공시기준 부합여부만 고려)
특징	준(準) 비교공시	각사의 리스크 공시수준 비교불가
범위	포괄공시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시
체계	수평적 공시체계	보험, 시장 등 리스크유형별 공시 지향

또한 <표 V-8>에서와 같이 리스크관련 공시 항목별 서식 측면에서 보면 별도서식을 제정한 공시항목은 ① 신용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대출채권의 현황, 신용등급별 유가증권 익스포져 현황) ② 시장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 ③ 자산·부채의 잔존기간별 잔액 ④ 금리성 자산 및 부채현황 등과 같은 양적 정보이다. 반면, ① 보험위험관리 ②

유동성위험의 개념 및 관리방법 ③ 금리위험 관리 ④ 운영위험관리 등은 별도서식을 제정하지 않은 공시항목으로서 주로 질적 공시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축약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표 V-8> 리스크관련 공시의 항목별 서식

서식 제정 공시항목 (별도 서식을 제정한 항목)	서식 미제정 공시항목 (별도 서식을 제정하지 않은 항목)
-신용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 ·대출채권의 현황 ·신용등급별 유가증권 익스포져 현황 -시장위험관리대상 익스포져 현황 -자산·부채의 잔존기간별 잔액 -금리성 자산 및 부채현황	-보험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의 개념 및 관리방법 -금리위험 관리 -운영위험 관리

#### 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공시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 공시의무자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전송하는 종합기업공시시스템이 DART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기업과 이를 열람하는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소정의 테스트를 거친 후 2005년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공시체계를 살펴보면 <표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공시:3공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공시, 지분공시, 특수공시, 발행공시, 감사공시 등과 같은 7공시사항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사항,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사항 등 3공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 -9> DART에 의한 공시 현황 및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항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록법인결산보고서	-
수시공시	-주요경영사항권고	채무구조변경관련,기업경영환경변경관련,대규모손실관련,채권채무관계변동관련,투자 및 출자관련, 수익구조변경관련, 주식매수선택권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신고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
기타공시	-안정조작 -시장조성 -금감위 등록/취소	-
지분공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공개매수	-
특수공시	-자산유동화 -자기주식취득/처분 -신탁계약체결/해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
발행공시	-유가증권신고(주식)	유가증권신고서, 예비/간이/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사채)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주식워런트증권)	-
	-유가증권신고(주식연계증권)	-
	-유가증권신고(파생결합증권)	-
	-유가증권신고(기타)	-
-소액공모(주식)	-	
-소액공모(사채)	-	
-소액공모(주식워런트증권)	-	
-소액공모(주식연계증권)	-	
-소액공모(파생결합증권)	-	
-소액공모(기타)	-	
-호가중개시스템상의 소액매출 신고	-	
감사공시(3)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
공시사항	유가증권시장 본부	-수시공시 -시장조치/안내 -공정공시 -지분공시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등
	코스닥시장 본부	-수시공시 -시장조치/안내 -공정공시 -증권투자회사
7공시·3공시사항	46 공시항목	

정기공시의 주요항목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록법인 결산보고서 등 4가지 항목, 수시공시의 주요 항목은 주요 경영사항 권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등 3가지 항목, 기타 공시의 주요 항목은 안정조작, 시장조성, 금감위 등록 및 취소 등 3가지 항목, 지분공시의 주요항목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 및 주요주주소유 주식보고서, 공개매수 등 3가지 항목, 특수공시의 주요항목은 자산유동화,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등 3가지 항목, 발행공시의 주요 항목은 유가증권신고(주식), 유가증권신고(사채) 등 12가지 항목, 감사공시의 주요항목은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등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사항은 수시공시, 시장조치 및 안내, 공정공시, 지분공시 등 4개 항목,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사항은 수시공시 및 시장조치 및 안내, 공정공시, 증권투자회사 등 4개 항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사항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7공시·3공시사항은 46개 세부공시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 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의 경영정보자료와 금융산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DB화한 것으로, 일반이용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별 경영통계자료 및 자료의 시계열 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대국민 금융통계정보 서비스기능을 확충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상태에 대한 시장감시기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는 크게 금융회사 경영정보와 금융통계월보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경영정보는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정리한 자료로서 <표 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요 경영지표, 주요 영업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V-10>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공시내역 및 특징

	경영정보	금융통계월보
F I S I S  구 성 내 용	-일반현황 ·임직원 및 모집인 현황 ·점포 및 대리점 현황	-총괄 ·보험사업의 주요지표(I) ·보험사업의 주요지표(II) ·보험사업의 주요지표(III)
	-재무현황 ·요약대차대조표(자산 : 전체) ·요약대차대조표(부채/자본: 전체) ·요약대차대조표(자산: 특별 a/c) ·요약대차대조표(부채/자본: 특별a/c)	-생명보험 ·생명보험 경영효율 ·생명보험 회사별 사업수지 ·생명보험 대차대조표 ·생명보험 손익계산서 ·생명보험 보험료수입 ·생명보험 종류별 보험료 수입 ·생명보험 사업비 ·생명보험 보험금,환급금, 배당금 ·생명보험 종류별보험금,환급금,배당금 ·생명보험 계약성적 ·생명보험 기능별 사업상황
	·요약손익계산서(전체) ·요약손익계산서(특별 a/c)	-손해보험 ·손해보험 경영효율 ·손해보험 대차대조표 ·손해보험 손익계산서(I) ·손해보험 손익계산서(II) ·손해보험 손익계산서(III) ·손해보험 종류별 경과 손해율 ·손해보험 종류별 사업실적(I) ·손해보험 종류별 사업실적(II) ·손해보험 종류별 사업실적(III) ·손해보험 회사별 사업수지
	-주요경영지표 ·자산건전성분류 ·자산건전성비율 ·대출채권 연체현황 ·수익성 ·유동성	
	-주요영업활동 ·사업실적표	

이용자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역의 개별 금융회사별로 경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통계월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간하는 책자인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3.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제도의 문제점

#### 가. 리스크관리부문의 공시 미흡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는 크게 경영공시, 전자공시, 통계공시라는 3가지의 공시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리스크 공시의 80% 이상은 경영공시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보고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리스크 공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공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사업보고서 내에 리스크관리에 대한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sup>35)</sup>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에서는 상장·등록기업 대상 사업보고서의 작성을 서술식 기재로 변경하고, “기업 및 경영에 대한 진단과 분석(MD&A)”의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리스크에 관한 공시를 확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3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1. 회사의 목적·상호 및 사업내용 등 회사의 개황,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계회사 등의 현황, 3.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4.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8.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외견상 재무성과, 회계지침, 주 업무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또는 경영공시자료를 통해 대부분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채(책임준비금) 부문과 리스크관리 부문의 공시는 국제감독기구의 요구사항 및 선진금융회사의 사례와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리스크 공시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닌 네거티브시스템체계로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네거티브시스템체계로의 리스크 공시체계 전환이라는 리스크 공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리스크 공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나. 공시내용의 양·질 미흡

현행 경영통일공시기준 또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공시사항은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하며, 리스크관련 공시사항은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어 질적으로도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양적 정보가 아직도 국제감독기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익스포저 현황, 성격 및 관리방법뿐만 아니라 리스크익스포저의 추이, 향후전망 등 양적 정보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설명 등의 질적 정보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스크 공시 실태 측면에서 볼 때 양적 정보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심도 있는 질적 정보의 공시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보험시장의 불확실성과 개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변화 등에서 기인하는 제반 리스크 관련 정보는 과거의 재무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정보에 비해 리스크관리의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보다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사례에 준하는 질적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 다.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부재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는 포괄공시, 자율공시, 준비보고공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리스크 공시의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선진국의 리스크 공시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실태 및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유용한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공시가 매우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 항목도 제외된 경우가 많다. 특히 DART에 의한 공시는 일반기업과 유사한 서식에 의한 양적 정보에 치중하고 있어 금융회사 고유의 리스크를 공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어,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sup>36)</sup>에 의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요청 사항은 ① 보험회사 이원분석 현황, ② 보유 유가증권의 신용등급별 신용익스포저 현황, ③ 이자율 변동 관련 리스크 현황, ④ 보험회사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 및 손해율, ⑤ 리스크 익스포저의 성격, 리스크 규모 추이, 향후 전망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 내용은 이러한 구체적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36)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 T/F, "금융회사 리스크관련 공시 확대 방안", 2005.3.

## VI.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용방안

### 1. 기본방향

#### 가. 리스크 공시제도의 단계적 운용

리스크 공시가 필요한 이유로는 시장규율 확립 및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수준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시장규율이 확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 시장참가자들의 감시 유인이 존재하고, ② 시장참가자들이 리스크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③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고, ④ 충분한 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⑤ 전달하는 정보의 충실화를 위해 회계제도 및 지배구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표 VI-1> 리스크 공시의 기본적 인프라

	인프라 형태	세부 내용
시장규율이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리스크 감시유인 존재	보험계약자, 주주, 감독당국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력	리스크 인식, 평가 및 비교 능력
	충분한 이해관계자 존재	다수의 계약자, 투자자, 채권자
	효율적인 금융시장 존재	자발적인 리스크 공시를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회계제도정비 등	공정가치회계제도

리스크 공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볼 때 선진금융시장에서는 시장 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소유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고,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채권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 공시를 둘러싼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리스크 공시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스크 공시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과 시장 환경이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용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표 VI-2>와 같은 방향으로 리스크 공시제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 리스크 공시를 둘러싼 국내 감독정책 및 국제적인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단계(2006~2007년), 제2단계(2008~2010년), 제3단계(2011년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부합하다.

먼저 제1단계(2006~2007년)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리스크 공시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경영공시상의 재무상황 중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부문의 내용을 확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단계(2008~2010년)에서는 RBC제도 및 RAAS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 중심의 보험감독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정책과 상호 연계되는 리스크 공시체계의 개선이 더불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2011년 이후)에서는 신BIS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이에 기초한 Solvency II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보험산업에도 국제적인 수준의 리스크 공시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공시제도를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lt;표 VI-2&gt; 리스크 공시체계의 단계별 추진기준 및 상황

추진 단계	제1단계 (2006 ~ 2007년)	제2단계 (2008 ~ 2010년)	제3단계 (2011년 ~)
기준	현 상태 지속	리스크 감독정책 시행	Solvency II의 제정 완료
여건	현행 경영통일공시 충실화 필요	RBC 및 RAAS제도의 도입 및 실질적 적용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 부합 요구

#### 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

리스크 공시 관련 국제감독기구 및 선진사례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감독기구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과 시장규율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 공시의 강화를 권고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 공시 요건은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수준이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장규율의 강화 차원에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간 균형,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정책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리스크관리정책 및 관리모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요 가정 및 불확실성 등에 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요구가 중소형보험회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요구 수준은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iti Group, ING, AIG, Sun Life Financial 등의 리스크 공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들 금융회사는 주로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영상태 및 리스크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리스크 공시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보험회사보다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공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수준은 점차 높아져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안과도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주로 사업보고서의 MD&A부문에서 전체적인 리스크관리 목적과 방법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non-GAPP 재무지표일지라도 보험업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sup>37)</sup>

우리나라도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리스크 공시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데, 리스크 공시의 국제화는 크게 ① 자본 및 리스크 익스포져 공시 ② 질적 및 양적 공시 중심의 공시 등 두 개의 틀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I-3>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지침 및 권고

국제감독기구	리스크 공시의 지침 및 권고안
신BIS협약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평가절차와 자본적정성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
합동실무작업반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간 균형, 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 공시
IAIS	재무상태,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방식, 회계정책 정보

#### 다.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제고

현행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권고안을 보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 및 증권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리스크 공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일부 선진 보험회사의 경우 시장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 수준을 은행 및 증권사 수준으로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증권사 및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리스크성격 및 특성이 상이한 상태에서

37) 유럽보험사의 내재가치, Sun Life의 이원분석 공시 등이 해당됨.

다른 산업에서 요구하는 공시수준을 넘는 과도한 공시는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중복된 리스크 공시는 방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정보 제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 공시의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 내용은 자칫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제도 운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 과도한 공시 지양, ② 불합리한 공시 탈피, ③ 보험회사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리스크 공시제도가 보험계약자, 주주 및 채권자 등 시장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용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리스크 공시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2. 세부방향

### 가. 공시원칙

합동실무작업반(MWG)에서는 공시의 목적을 시장규율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자원의 적정배분을 유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공시원칙은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간 균형, 금융기관의 내부리스크 평가 및 관리방법과 일관된 내용을 공시할 것 등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는 보험회사가 공시해야 할 정보로서 재무상태,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방식, 회계정책과 관련된 사항, 경영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 보험회사의 공시원칙 역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규율을 촉진시킨다는 대전제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시원칙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양적 공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질적 공시를 강화하고, 손익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리스크중심 감독정책의 변화로 RAAS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를 보여주는 양적 공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를 보여주는 질적 공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므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련 질적 정보 역할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적 공시 편중의 리스크 공시체계에서 양적 및 질적 공시 균형의 리스크 공시체계로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의 일반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운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선진사례와 큰 격차가 존재하며,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수준과는 더욱 더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점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리스크중심 감독정책 및 Solvency II의 pillar 3 제정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공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 수준 및 범위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공시수준 : 단계별 운용 방안

여기에서는 리스크중시의 감독정책 변화 및 우리나라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공시 운용방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리스크 공시 수준에 대한 세부방향 제시는 III장과 IV장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① 자기자본 내역 및 자본적정성 공시, ② 신용리스크 공시 ③ 시장리스크 공시 ④ 운영리스크

크 공시 ⑤ 책임준비금 추정방법 및 보험리스크 공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리스크 공시 수준의 제시는 현 단계인 제1단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제감독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 공시 수준을 종합적으로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제2단계 및 제3단계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첫째, 자기자본 내역 및 자본적정성 공시 방향은 <표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자기자본 내역의 경우 제1단계 및 제2단계에 걸쳐 자본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질적 정보의 강화가 요구되지만, 신종자본증권 및 하이브리드자본과 같은 보완자본에 대한 질적 공시는 제3단계인 2011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자본 내용 중에서 자본 항목별 금액에 대한 양적 공시는 RBC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중시 감독정책이 시행되는 2008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자본적정성 공시의 경우 자본적정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은 질적 공시 차원에서 제2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Solvency II가 도입되는 제3단계에서는 요구자본이 최저자본<sup>38)</sup>과 목표자본(target capital)<sup>39)</sup>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공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보험회사의 자본상태가 최저자본은 초과하였지만, 목표자본에 미달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공시될 경우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시장반응이 나타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감독당국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어려움이 더 가중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제3단계에서의 자본적정성 공시는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자본과 내부모형에 의해 산출된 경제적 자본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8) 감독 측면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본수준

39)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적절한 자본수준

<표 VI-4> 자기자본내역 및 자본적정성의 단계별 공시방향

구분		공시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자기 자본 내역	질적	- 자본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신종자본증권, 하이브리드자본 등 보완자본에 대한 공시 확대
	양적	-	-기본자본 항목별 금액	-보완자본 항목별 금액
자본 적정 성	질적	-	-자본적정성평가방법	-
	양적	-	-법정요구자본 총액	-감독 목적의 최저자본 (리스크유형별) -내부모형에 의한 경제적 자본

둘째,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1단계 및 2단계에서 상당부분을 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험리스크와 달리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는 2000년대 들어 측정이론 및 방법이 정교화되었으며, 측정시스템이 구현되어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행 경영공시기준의 내용을 충실화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관리방법 및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내용을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잔여만기별 익스포저 분포, 부실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 산업별·지역별 익스포저의 분포, 신용등급별 익스포저 분포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양적 공시가 요구된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는 신용리스크관리 관련 자본배분, 한도설정, 관련 자산의 평가방법, 재보험사의 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만약 Solvency II가 구현되어 보험회사가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내부모형의 사용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승인받은 내용(내부등급체계와 내외부 등급간의 관계 등)을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lt;표 VI-5&gt; 신용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질적 공시	-신용리스크관리 정책(자본배분, 한도설정 등) -관련 자산의 평가방법 등 -출재 리스크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양적 공시	-만기구조별 익스포져 -대손충당금 변동 사항 -산업별·지역별 익스포져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등		-최저요구자본 -경제적 자본

셋째, 시장리스크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1단계 및 2단계에서 상당수준의 리스크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경영공시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관리방법, 시장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자산-부채미스매칭리스크에 대해서도 2단계에서 질적 공시를 하도록 한다.

&lt;표 VI-6&gt; 시장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질적 공시	-시장리스크관리 정책(방법론, 모델특성 등) -변동성 측정 방법(stress testing, 민감도 등) -검증방법(back testing) -ALM 관리 방법 등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양적 공시	-연말 VaR -최고, 최저, 평균VaR -사후검증 결과에 대한 분석 -예측값과 실제값 비교 등		-최저요구자본 -경제적 자본

양적 공시 내용으로는 시장리스크의 요구자본량, 연간 최고, 중간, 최저 VaR 값, 연말 VaR값, 사후검증 결과 이상치에 대한 분석, 예측값과 실제값의 비교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정보로는 시장리스크 측정 방법론, 측정모델의 특성, stress testing·민감도분석 등 변동성 측정방법, 검증방법(back testing) 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시장리스크도 Solvency II에 의해 내부모형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승인받은 내부모형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여 시장리스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운영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현재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운영리스크는 충분한 계량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운영리스크는 지급불능과 연관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에서 운영리스크관리의 프로세스와 더불어 관리방법론 등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운영리스크 관련 공시부문이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리스크 공시 부문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운영리스크 공시부문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표 VI-7> 운영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질적 공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운영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방법 (준법감시, 정책, 가이드라인) 등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비상계획
양적 공시			

제3단계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운영리스크 감소를 위해 가입한 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책임준비금 및 보험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 항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정보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경영공시체계에서는 서식작성 위주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감독규정상 세부구성 항목별<sup>40)</sup>로 정의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부채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이므로 추정방법 및 관련 변수에 따라 손익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한 공시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중 부채부문을 확충하여 자산부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 공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의 추정방법에 대한 설명, 책임준비금 추정에 사용된 경제적·계리적 가정에 대한 제반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현행 준비금 평가방식이 원가법(lock-in)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sup>41)</sup>를 적절히 공시함으로써 공시의 유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이다. 보험리스크는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와 달리 아직까지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고유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과의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금융업종간 불균등한 공시수준을 요구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공시권고안에 대해서도 민감한

40)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출재보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41) 사망률, 입원율, 사업비율, 주식수익률, 이자율, 해약률 등

가격정보와 경영기밀사항에 대한 공시 요구는 과도한 수준으로서 타 금융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높다. 따라서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가 확립되고, Solvency II가 도입된 3단계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리스크의 질적 공시 측면에서는 보험리스크관리 목적, 정책,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중요 가정이 도출되는 프로세스 및 기타 불확실성에 관련된 사항 및 가정들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도 바람직하다. 또한, 변액보험 등과 같이 최저보증이 내재된 상품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공시도 요구된다. 또한, 가격설정, 위험률, 준비금적정성 등에 대한 질적 공시도 요구된다.

양적 공시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계리적 가정<sup>42)</sup>의 변동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도분석 결과를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내 재가치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통방식<sup>43)</sup>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2) 사업비, 유지율, 연금사망율, 입원율, 일반사망률 등

43) 사업비율  $\pm 10\%$ , 해약률  $\pm 10\%$ , 연금사망률  $-10\%$ , 사망률 및 입원률  $+10\%$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효과

&lt;표 VI-8&gt; 책임준비금 및 보험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책임 준비금	-책임준비금 추정방법에 대한 정보 -책임준비금 추정에 사용된 경제적·계리적 가정(이자율, 사망률, 사업비율, 주식수익률, 해약률 등)에 대한 설명		
보험 리스크	-보험리스크 측정, 관리방법		-내부모형 사용시 측정모형에 대한 설명 -가격설정, 준비금적정성 -보험리스크경감방안(재보험 등) -민감도분석 -내재파생상품 관련 리스크 -최저요구자본 -경제적 자본

#### 다. 공시주기 및 요건

공시의 주기는 장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목적과 원칙, 보고시스템 및 정의와 같은 질적 공시를 제외하고는 반기(6개월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자기자본 내용은 분기(3개월 단위)별로 공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나 다른 항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분기별(3개월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시요건 측면에서 이사회 등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공시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공시 프로세스에 관한 내부 통제를 갖추고 공시의 검증과 빈도를 포함하여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 평가절차와 자본 적정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촉진하는데 공시목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시의 내용 등은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에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공시형식

리스크 공시의 형식은 현재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기존 리스크 공시 방법 등)와 효율적인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스크 공시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리스크 공시의 방식은 ①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한 공시 ②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공시 ③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에 대한 공시는 생·손보협회의 자율공시체계 방식을, ② 및 ③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체계 방식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리스크 공시는 비교가능성, 유용성, 객관성 등과 같은 리스크 공시 원칙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VI-9> 공시방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대상	- 정기 경영공시: 경영현황 - 수시 경영공시	-점진적으로 경영통일공시와 사업보고서 내용을 통합하여 간편성과 효율성 제고 -사업보고서에 의한 리스크 공시 문제는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이 필요
형태	- 자율공시(비정형화된 공시)	-실효성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하지만, 최저 수준 이상의 자발적 공시 유도

리스크 공시는 현행 경영통일공시에 의한 정기경영공시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효율성과 간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선진

국처럼 사업보고서에 의한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 공시 형태 측면에서는 현행처럼 자율공시체계를 지향하되, 리스크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며,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공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향후과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는 국제감독기구의 공시내용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① 리스크관리 부문의 공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② 양적·질적으로 공시내용이 취약하고 ③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크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이 감독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보험회사들이 경영성과의 공시에 대한 자발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모범규준(best practice)으로 간주하여 최고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공시제도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향후 변동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시장규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험회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공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통일공시기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제와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대한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RBC 및 RAAS 시행과 같은 감독정책의 변화 및 Solvency II 체계 확립 등과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스케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및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스케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일반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영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공시의 내용을 쉽게 시장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우리의 경우 감독당국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체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지만, 리스크 공시의 주체는 보험회사임을 감안할 때 리스크 공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금융회사들은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최저 수준으로 보고, 추가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소시키고 있다.

향후 우리 보험회사들도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국제시장에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선결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이를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공시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위해 공시위원회를 두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우리 보험회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관리 체제를 선진화하고, 시장규율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VI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감독기구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한 리스크 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선진국들의 리스크 공시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리스크 공시 중심의 리스크감독정책의 변화는 신BIS규제상의 리스크 공시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BIS규제의 pillar 3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보험권의 Solvency II가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제도의 운영이 직·간접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 공시를 둘러싼 금융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한 단계별 리스크 공시 방향이 리스크 공시의 로드맵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즉,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기준과 선진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 현황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검토한 후에 국내 실정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감독정책의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감독기구가 제시한 리스크 공시 관련 기준과 선진국의 리스크 공시 관련 규제 및 감독,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 등을 조사하고, 우리 현실을 이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시안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리스크 공시의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볼 때 단기간 내에 리스크 공시의 선진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공시는 단계별로, 즉 제1단계(2006~2007년), 제2단계(2008~2010년), 제3단계(2011년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리스크 공시의 단계화). 둘째, 우

리나라도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자본 및 리스크 익스포져 공시, 질적 및 양적 공시 중심의 공시 등 두 개의 틀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리스크 공시의 국제화). 셋째, 리스크 공시제도가 일반인,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한 리스크 공시, 왜곡된 리스크 공시가 아닌 유용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 공시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세부방향 측면에서 볼 때 공시원칙 경우, 양적 공시 위주에 탈피하여 질적 공시를 강화하고 손익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리스크중심 감독정책 및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제인 Solvency II의 pillar 3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나는 리스크 공시 가이드 라인 등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 수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시수준 측면에서는 ① 자기자본 내역 및 자본적정성 공시의 경우, 제1단계 및 제2단계에 걸쳐 자본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질적 정보의 강화가 요구되지만, 신종자본증권 및 하이브리드자본과 같은 보완자본에 대한 질적 공시는 제3단계인 2011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적정성 공시의 경우, 자본적정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은 질적 공시 차원에서 제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잔여만기별 익스포져 분포, 부실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 산업별·지역별 익스포져의 분포,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양적 공시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질적측면에서는 신용리스크관리 관련 자본배분, 한도설정, 관련 자산의 평가방법, 재보험자의 신용리스크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③ 시장리스크에 대한 공시의 경우, 양적 공시 내용으로는 시장리스크의 요구자본량, 연간 최고, 중간, 최저 VaR값, 연말 VaR값, 사후검증

결과 이상치에 대한 분석, 예측값과 실제값의 비교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질적 정보로는 시장리스크 측정방법론, 측정모델의 특성, 민감도분석, 검증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④ 운영리스크에 대한 공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리스크 공시 부문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운영리스크 공시 부문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제3단계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비상계획, 운영리스크 감소를 위해 가입 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⑤ 책임준비금 및 보험리스크 공시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추정방법에 대한 설명, 책임준비금 추정에 사용된 경제적·계리적 가정에 대한 제반 정보 등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리스크중심 감독체계가 확립되고 Solvenvy II가 도입된 제3단계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질적 공시 차원에서는 보험리스크관리 목적, 정책,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양적 공시 차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비율, 유지율 등과 같은 계리적 가정의 변동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도 분석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시될 수 있다.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민감도분석 결과의 공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공시주기 및 요건 측면의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목적과 원칙, 보고시스템 및 정의와 같은 질적 공시를 제외하고는 반기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자기자본 내용은 분기별로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시요건 측면에서 이사회 등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공시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공시 프로세스에 관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공시의 검증과 빈도를 포함하여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공시의 향후과제 측면에서 볼 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향후 변동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시장규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RBC 및 RAAS 시행과 같은 감독정책의 변화 및 Solvency II 체계의 확립 등과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스케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은 보험회사의 규모 등 시장에서의 영향력 및 현재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회사 역시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영성과를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 공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진금융회사 사례, 각국 규제 및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제도 선진화를 위한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 참고 문헌

- 김정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규율」, 『KDIC 금융연구』, 제5권 제3호, 예금보험공사, 2004. 9.
- 김정렬,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과 시장규율」, 『KDIC 금융연구』, 제3권 제2호, 예금보험공사, 2002. 6.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제도』, 2005. 12.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공시제도 공시 개선 T/F, 「금융회사 리스크관련 공시 확대 방안」, 2005. 3.
- 금융감독원 신BIS실, 『신BIS 길라잡이』, 2005. 4.
- 금융감독원 신BIS실, 『알기 쉬운 BIS』, 2006. 1.
- 보험개발원, 「EU 지급여력제도 개선 추세 및 시사점: EU Solvency II 를 중심으로」, 『CEO Report』, 2004-8, 2004. 6.
- 삼일회계법인, 「Basel II 의 보험권역 적용 가능성 검토」, 2004. 12.
- 손해보험재팬종합연구소, 「先進國における金融・保険業に関する資本要件規制の變化の方向性」, 『損保ジャパン總研クォーターリー』, Vol. 44, 2005. 3.
- AIG, *Annual Report*, 2005.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est Practice for Credit Risk Disclosur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September 2000.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Enhancing Banking Transparency",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September 1998.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05. 11.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e New Basel Capital

- Accord",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January 2001.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rading and Derivatives Disclosure of Banks and Securities Firm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ecember 1999.
- Citi Group, *Annual Report*, 2005.
- Euro-Currency Standing Committee(G-10 Central Banks), "Public Disclosure of Market and Credit Risks by Financial Intermediaries(Fisher Report)", 1994.
- European Commission, "Draft Amended Framework for Consultation on Solvency II", March 2005.
- Financial Service Authority, "Solvency II: a new framework for prudenti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he EU-A discussion paper", February 2006.
- ING Group, *Annual Report*, 2005.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January 2006.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FRS 4 Insurance Contracts: Guidance on Implementing*, 2004.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FRS Insurance Contracts*, 2004.
-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2004.
-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Insurance Risk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vember 2005.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Guidance Paper on Public Disclosure by Insurers", January 2002.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Standard on

- Disclosures Concerning Investment Risks and Performance for Insurers and Reinsurers", October 2005.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Standard on Disclosures Concerning Technical Performance and Risks for Non-Life Insurers and Reinsurers", October 2004.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Towards a Common Structure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Insurer Solvency: Cornerstones for the Formulation of Regulatory Financial Requirements", October 2005.
- KPMG, "Study into the methodologies to assess the overall financial position of an insurance undert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prudential supervision", May 2002.
- 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 *Financial Report of the 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 on Enhanced Disclosure*, Apr. 2001.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Accoun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Manual*, 1999.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Derivatives Disclosure", October 1995.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Guideline: Annual Disclosures", June 2004a.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Guideline: Annual Disclosure Requirements", December 1997.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Guideline: Source of Earnings Disclosure", December 2004b.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Memorandum to the Appointed Actuary", 2005.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P&C Memorandum to the Appointed Actuary", 2005.

Sun Life Financial, *Annual Report*, 2005.

Swiss Re, "Solvency II: an integrated risk approach for European insurers", *Sigma*, No. 4, 2006.

The Joint Forum, *Financial Disclosure in the Banking, Insurance and Securities Sectors: Issues and Analys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May 2004.

미국 증권감독원 감독기준([www.sec.gov](http://www.sec.gov))

캐나다 금융감독원 감독기준([www.osfi-bsif.gc.ca](http://www.osfi-bsif.gc.ca))

영국 금융감독원 감독기준([www.fsa.gov.uk](http://www.fsa.gov.uk))

##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중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Ⅲ)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9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증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 퇴출에 관한 연구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9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 I )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원배상책임보험 / 업창회,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1호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 - 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0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기지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 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보험동향 (계간 ₩ 20,000)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http://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 저자약력

###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재무연구팀장)

(E-mail : keon@kidi.or.kr)

### 이 경 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 khlee@kidi.or.kr)

연구보고서 2006-4

###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체계 연구

---

발 행 일 2006년 10월 일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오 영 수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

ISBN 89-5710-039-3

정가 10,000원